

910.111
통14
Y2005

2005년 기준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조 사 지 침 서

2006. 3.

Boon1964



통계청

차 례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법적근거	1
3. 조사연혁	1
4. 조사대상	1
5. 조사단위	1
6. 조사시기	2
7. 조사체계	2
8. 조사방법	2
9. 조사표종류 및 조사항목	2
10.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3
II. 조사업무수행 요령	4
III. 주요 업무흐름도	8
IV. 조사대상	12
1. 법인사업체의 정의	12
2. 조사단위	13
3. 조사대상	14
가. 산업분류에 의한 조사대상	14
나. 조직형태에 의한 조사대상	14
V. 조사용품 수령	17
VI. 준비조사 및 본조사	18
1. 사업체명부 확인, 보완 및 조사대상 확정	20
가. 사업체명부 배부	20
나. 사업체 소재지 및 유고 여부 확인	20
다. 사업체명부 보완방법	20
라. 전년대비 사업체명부 증감 코드표	27
2. 조사표 작성	28
가.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28
나. 항목별 작성요령	29

VII. 조사 시 상황별 대처 방법	54
1. 조사대상사업체가 조사관할 지역 밖으로 진출하였을 경우	54
2. 조사대상사업체가 조사관할 지역으로 전입하였을 경우	54
3. 조사대상사업체가 조사대상외사업체로 변경되었을 경우	55
4. 신규사업체가 새로 발굴되었을 경우	55
VIII.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제출	56
1. 조사표류 내용검토	56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56
나. 조사표 확인사항	57
다. 조사항목별 내용검토	57
2. 조사결과표 작성	59
가. 조사결과 집계표 작성	59
나. 내검결과 오류내역표 작성	60
3. 조사표류 제출	60
4. 조사표 편철요령	61
5. 결산서 편철 및 표지 작성요령	61
IX. 조사요원 안전수칙	62
X. 조사사례	64
【부록】	
1. 농기계부호표(동력)	75
2. 농작물부호표	76
3. 가축부호표	77
4. 어종(내수면)분류표	77
5. 재무제표	78
6. 전년대비 사업체명부 증감코드표	83
7. 전년대비 조사표 수준별 검토표	86
8. 조사표작성 예시	91
※. 현황보고 및 조사표류 제출 일정	11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분석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기존 농수산통계와 결합하여 농어업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 제10155호로 승인

3. 조사연혁

- 2001년 지정통계로 승인 받아 최초 조사 실시

4.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조사대상산업 〉

	조사대상산업	조사대상이외산업
농업 부문	011 작물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파작과)
	012 축산업	- 애완 및 실험용 동물사육업, 부화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
	01421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 (영농대행업)	014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을 제외한 조경수 식재 및 작물재배 관련서비스업
어업 부문	051 어로어업	0522 어업관련서비스업
	0521 양식어업	

※ 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거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조사대상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

5. 조사단위

- 농어업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
 -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를 말한다.

6. 조사시기

- 조사기준일 : 2005. 12. 31.
 - 특히 사업체의 조사대상여부, 종사자수,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양식장시설, 어선보유척수, 출자 및 정부지원현황 등은 조사기준일 시점으로 조사하는 항목이다.
- 조사대상기간 : 2005. 1. 1. ~ 12. 31. (1년간)
 - 특히 농작물 재배면적, 농축산물 판매(수입)액, 수산물 판매(수입)액,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등은 조사대상기간 단위로 조사하는 항목이다.
- 조사실시기간 : 2006. 4. 3. ~ 4. 19일(13일간)
 - 준비조사 : 2006. 4. 3. ~ 4. 5.(3일간)
 - 본 조사 : 2006. 4. 6. ~ 4. 19.(10일간)

7. 조사체계

- 통계청 ⇔ 지방청·사무소(출장소) ⇔ 조사원

8.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면접 질의하여 타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여건 등에 따라서는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9. 조사표 종류 및 조사항목

- 공통 조사항목
 - 난외 사항(8개) :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종사자수, 응답자
 - 난내 사항(4개) : 경영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판매(수입)액, 경영실태
- 농업법인 특성 조사항목(4개)
 -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농작물 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
- 어업법인 특성 조사항목(2개)
 - 양식장 시설, 보유 어선현황

○ 조사형태별 조사항목

《 조사표 종류와 조직형태별 조사항목 》

구 분	농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표		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표	
조직형태별 조사항목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8개항목 모두 조사	- 영어조합법인	- 6개항목 모두 조사
	- 일반회사법인	- 7개항목 조사 (6번 항목 제외)	- 일반회사법인	- 5개 항목 조사 (4번항목 제외)
	- 국가, 지자체 - 생산자단체 - 학 교 - 기 타	- 4개항목(1~4) 만 조사	- 국가, 지자체 - 생산자단체 - 학 교 - 기 타	- 2개항목(1~2) 만 조사

10.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 결 과 공 표 : 2006. 9월
- KOSIS 및 통계청 홈페이지 수록 : 2006. 9월
- 보고서 발간 : 2006. 10월

II. 조사업무수행 요령

□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 조사기간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 ✓ 교육받은 사람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 ✓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23조)에 의하여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 담당 공무원이나 조사관리자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매일 조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 사업체를 방문하기에 앞서 지참해야 할 용품이 빠지지 않았나 점검한다.
 - 조사표, 사업체명부, 관리명부, 조사지침서, 필기구, 받침대 등
- ✓ 조사원증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바른 언행으로 사업체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한다.
-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은 가급적 피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 사업체에 허락을 받은 후 방문하여 조사한다.
- ✓ 조사대상처와 약속한 방문 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조사대상사업체 대부분이 농어민으로 면접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 응답자와 면접 가능 일시를 약속받는 것이 필요하다.
 - 옥외작업 등으로 응답자와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응답자의 휴대폰 번호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지 못한 경영수지 항목 등은 응답자에게 작성을 의뢰한 후 다음 약속한 일자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응답자가 세무사를 통하여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결산서를 회수한다.
 - 결산을 하지 않는 사업체는 직접 응답자에게 물어서 기입한다.

□ 사업체를 재방문하여야 하는 경우

✓ 적격응답자와 면담이 곤란한 경우

- 재방문 일자를 적격 응답자에게 전달토록하고 재방문한다.

✓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게 된 경우

- 약속된 일자에 재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하고 현장에서 검토한다.

✓ 기입누락이나 착오 기재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조사표를 수정·보완한다.

□ 사업체 방문 조사 요령

✓ 사업체를 방문하면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힌다.

[예] “저는 통계청에서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를 하러 나온 조사원입니다.”

✓ 적격 응답자(사업체의 사정을 잘 아는 경영주, 경리 및 재무회계팀원 등)인지를 확인하고 조사목적과 소요시간을 알려 준다.

[예]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에서는 농(어)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농어업법인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평균 15분정도가 소요 됩니다”

✓ 조사 항목별 특성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 응답자가 고의로 허위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

- 농업법인 : 농축산물판매액, 회계장부 작성여부, 사업수지사항 등
- 어업법인 : 수산물판매(수입)액, 회계장부 작성여부, 사업수지사항 등

- 응답자의 이해도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

- 농업법인 : 종사자수, 경영경지면적, 농작물재배면적 등
- 어업법인 : 종사자수, 동력어선내역 등

□ 사업체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문 유형과 응답 방법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는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어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는 기존 농수산통계조사와 결합하여 농어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가 없다면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어 자칫 국민들이 내는 아까운 세금이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 안하면 안되나요, 꼭 해야 하나요?

- 안하시면 비싼 세금을 들여 조사하는 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법(통계법)에 의해서도 모든 국민이 통계조사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어디서 조사합니까?

-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 통계청은 실업률, 물가통계, 인구통계와 같은 국가기본통계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이러한 조사는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 통계청에서는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를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 등기부자료 같은 행정자료를 보면 될텐데……

- 행정자료만으로는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명 정도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실제 필요한 자료가 없어 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사업체의 운영상황을 외부에 밝히긴 싫는데……

- 조사되는 내용은 엄격히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 남에게 절대 누설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 조사되는 내용은 전부 숫자로 바뀌어서 컴퓨터에 기록되므로 어느 사업체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업체명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 조사표 작성은 사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 지금 바쁘시다면 시간 약속을 해 주시면 그때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 통계가 믿을 만 합니까?

- 통계 자체는 과학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 다만 응답자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통계의 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야만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Ⅲ. 주요 업무흐름도

1. 준비물 수령 및 교육

(3. 24. ~ 3. 31.) : 지방청 · 사무소(출장소)

- 실사 및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을 수령하고 확인한다.(3. 24.)
 - 조사표 2종(농업법인사업체용, 어업법인사업체용)
 - 조사지침서, 농어업법인사업체관리명부, 인사장 등
- 교육 실시(3. 27. ~ 3. 31. 중 1일)
 - 본청 교관이 사무소 및 출장소를 순회하며 조사원 및 실사지도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일부는 교육 받은 실사지도요원이 전달교육)

2. 준비조사 및 본조사

(4. 3. ~ 4. 19.) : 지방청 · 사무소(출장소)

- 준비조사(4. 3. ~ 4. 5.)
 - 소재불명 사업체나 사업체명부보완 시 미비하였던 사업체를 중심으로 확인한 후 명부를 보완한다.
 - 조사대상사업체에 대한 유고(휴업, 폐업, 사업준비중 등)를 확인한 후 명부를 보완한다.
 - 조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히 확인한다.

※ 조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 및 전출 사업체에 대한 현황은 4.19일
까지 농수산통계과로 통지한다. *정감*

반생각 / *본청* / *지방청*

- 본조사(4. 6. ~ 4. 19.)
 - 사업체 방문시 책임있는 응답자에게 인사장을 전달한 후 조사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 응답자가 직접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작성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사표 배부와 함께 회수일을 약속한 다음 반드시 약속한 날짜를 지켜 재방문하여 조사표를 회수한다.
 - 조사표 회수시는 조사내용의 누락 또는 기입착오 여부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재보완을 한다.
 - 실사지도요원은 담당지역을 순회하며 조사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지에서 해결한다.

3. 조사표 내용검토 및 질의보완

(4. 6. ~ 5. 4.) : 지방청·사무소(출장소)

- 조사원(4. 6. ~ 4. 19.)
 - 각자가 조사한 조사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 전에 지도요원의 확인을 받는다.
 - 항목 누락 또는 착오기입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는 전화 또는 현지 방문을 통하여 보완한다.
 - 제출할 조사표류 (4종)
 - 사업체명부(수정·보완한 것), 조사표, 농어업법인사업체 관리명부, 결산서 사본(결산서를 작성한 법인)
- 지방청·사무소 (출장소)(4. 20. ~ 5. 4.)
 -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최종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는 전화 또는 현지방문을 통하여 보완한다.

4. 조사표 입력 및 전산내검

(4. 20. ~ 5. 19.) : 지방청·사무소(출장소)

- 입력요원은 조사표를 입력한다.
- 입력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전산내검을 실시한다.
 - 조사누락 및 연관항목 불일치에 대한 질의 조회 및 보완을 한다.

5. 조사결과 제출

(5.22. ~ 5. 31.) : 지방청·사무소

- 지방청, 지방사무소는 조사결과를 취합 본청에 송부한다.
 - 조사결과 제출공문, 조사결과집계표 등

6. 자료처리

(6월 ~ 7월) : 농수산통계과

- 입력자료 기계내검 및 질의보완 한다.

7. 결과 집계·분석

(8월) : 농수산통계과

- 주요 항목별 결과를 집계 및 분석을 한다.

8. 결과공표 및 보고서발간

(9월 ~ 10월) : 농수산통계과

- 결과공표 및 KOSIS 수록 : 9월
- 보고서발간 : 10월

《 조사요원 및 실사지도요원의 업무수행사항 》

조사업무별	조 사 원	지방청 · 사무소(출장소)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교육 시간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소, 준비물 및 참석인원 점검 등
조 사 원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조사지역의 업무량을 할당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별로 적정 업무량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거주지역 중심으로 배정
조사서류 배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침서, 조사표 ✓ 준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증, 사업체명부, 인사장, 조사표, 관리명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별로 적정량의 조사표를 빠짐없이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 물량이 없도록 관리 철저
준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법인의 변동사항 및 조사대상 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불명, 휴·폐업 등 변동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서 조사대상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에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중점 지도·관리
조사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법인별로 조사표 작성 ✓ 응답자는 경영책임자가 적정 ✓ 당일 조사한 조사표의 검토는 실사지도요원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진도, 중도포기자 점검, 안전사고시 대책 등 조사원 관리 ✓ 응답불응 법인, 조사항목 작성시 문제점 등을 현지에서 해결
조사서류 내용검토 및 명부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한 조사표는 최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누락, 착오조사 및 연관항목 불일치 등 ✓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사업체 명부 최종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조사서류를 검토 후 미비사항은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조치 ✓ 관할 지방청 · 사무소(출장소)별 집계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 수집내역 총괄표, 조사결과 집계표 등
제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할 조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부, 조사표, 관리명부, 결산서 사본, 조사지침서, 조사원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할 조사결과 집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류내역표 - 조사결과 집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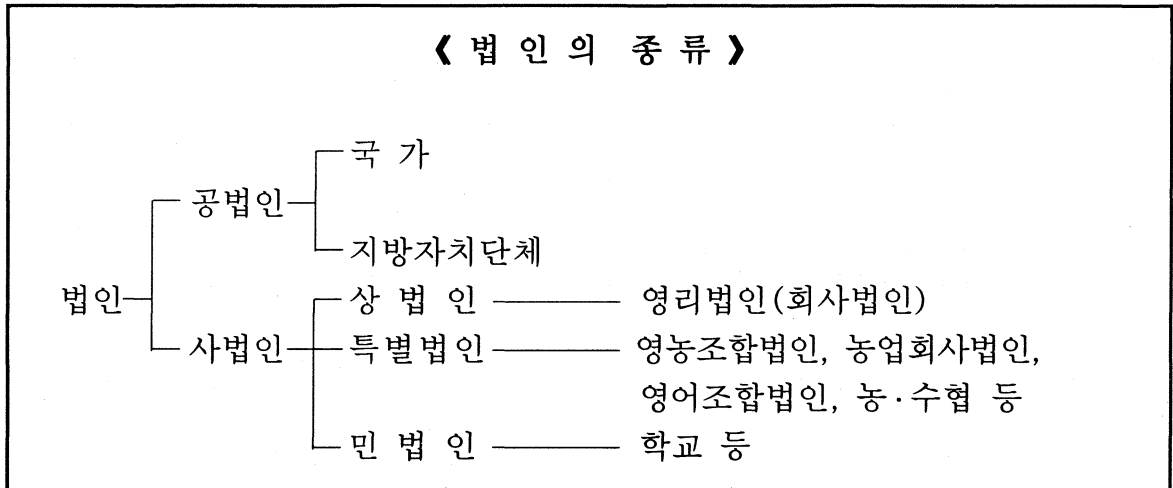
《현황보고 및 조사표류 제출 일정》

보고명	보고일정	보고방법	작성방법
✓추가 사업체 보고	4.19	지방청·사무소 취합 스마트플로우 우편	18쪽 참조
✓전출 사업체 현황통보 양식	발생시	스마트플로우 우편	54쪽 참조
✓전입 사업체 조사결과 양식			
✓사업체변동현황 보고양식 6	4.19	스마트플로우 우편	55쪽 참조
✓사업체명부 오류 내역표 ✓	4.19	스마트플로우 우편	20쪽 법인사업체 명부 참조
✓내검결과 오류 내역표	5.31	스마트플로우 우편	60쪽 참조
✓조사결과 제출 공문		지방청·사무소 취합보고	59쪽참조
✓조사결과 집계표			

IV. 조사대상

1. 법인사업체의 정의

- **법인이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민법 및 특별법(농업농촌기본법 등) 등에 따라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기업단위를 말한다.



- **사업체란** 영리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민법 및 특별법(농업농촌기본법 등)에 따라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경영단위를 말한다.
- 따라서 법인사업체란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 〉

- ✓ **농업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 경영 조직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회사법인 : 기업적 농업 경영 조직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 **일반 회사법인**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예] (주) ○○건설 ○○농장, (주) ○○축산 목장, ○○종묘주식회사
- ✓ **공법인** :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예]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시도 중축장, 강원도농업기술원 감자공급소
- ✓ **협동조합 및 기타 법인** : 농협법,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예] 농협 종묘장, ○○대학교 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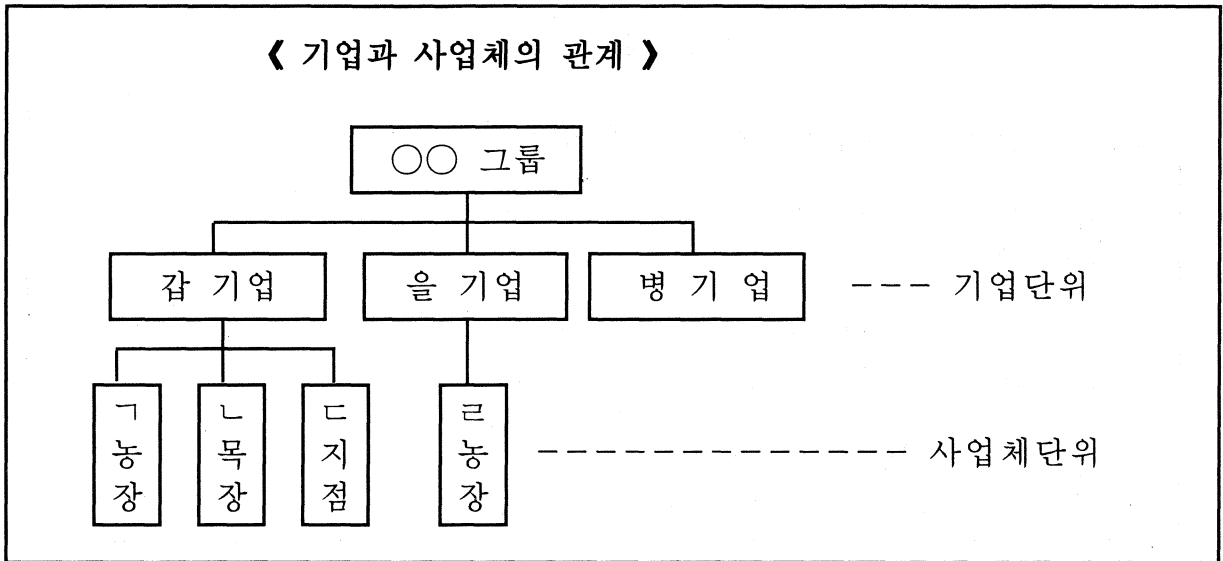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 ✓ 영어조합법인 :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 ✓ 일반 회사법인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예] (주) ○○수산
- ✓ 공법인 :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예]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종묘시험장, 시도 종묘시험장
- ✓ 기타 법인 :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예] ○○수산고등학교 양식장

2. 조사단위

- 조사단위는 작업계획의 기획·입안, 운영, 수지·결산 등이 동일 경영주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정(즉, **사업체 단위**)하되 그 기준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 ① 장소에 의한 구분
 -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의 장소별로 사업체를 조사한다.
 - ②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경영주체에 의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의 경영주체별로 사업체를 조사한다.
 - ③ 경영장부의 독립적인 운영여부에 의한 구분
 - 같은 장소에서 동일 경영주체가 두가지 이상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재무제표 등 회계행위를 독립적으로 하면 각각을 사업체로 조사한다.
- 1개 기업이 여러 지역에 지사·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각각의 지사·지점이 조사단위인 사업체가 된다.
 - 단,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각각 조사하고,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본사에 합산하여 조사한다.

〈 기업과 사업체의 관계 〉



3. 조사대상

가. 산업분류에 의한 조사대상

p1. 4. 조사대상 참조

나. 조직형태에 의한 조사대상

(1)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업적 농업경영조직을 말한다.

(2) 농업회사법인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기 위해,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업적 농업경영조직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가 해당된다.

(3) 영어조합법인

- 수산업법에 의거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출하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한 협업적 어업경영조직이다.

(4) 일반회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 농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여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가 해당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업관련 사업체를 말하며 농업시험장, 연구소, 종축장,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 채종장, 종묘부화장, 어업시험장 등이 해당된다.

(6) 생산자단체 (대통령령, 농업관련 기본법시행령 제43조)

-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낙농협동조합의 생축사업장, 법인어촌계 등이 해당된다.

~~산림조합, 농림협동조합, 영농생산협동조합 등~~

(7) 학교

-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시험연구나 교육을 위해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학(교)·고교 등의 실습농장, 목장, 실습어장이나 종묘시험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8) 기타

-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연구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 ✓ 2가구 이상의 농가가 자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판매, 수지결산, 이익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비법인 협업사업체
- ✓ 자재의 공동구입이나 농산물의 공동판매 등 일정부문에 대한 공동 목적을 위해 설립된 작목반, 낙우회같은 비법인 농업단체
- ✓ 농지개량, 인공수정소, 품종개량, 가금감별 등 농업서비스만을 하거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농산물을 선별, 건조 및 출하준비를 위한 고정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농업서비스업~~ (농업서비스업)
- ✓ 자재의 공동구입이나 어획물의 공동판매 등 일정부문에 대한 공동목적을 위해 설립된 어민단체로서 비법인어촌계 등이 포함된다.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어족보호나 수산물의 선별정리, 출하준비 등과 관련한 서비스활동을 하는 법인

※ 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은 조사대상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

새로

《 법인어촌계와 비법인어촌계의 차이점 》

구 분	법인어촌계	비법인어촌계
조사대상 유무	조사대상	조사대상 제외
설립, 조합원수	10인이상	-
설립 업무구역	읍면(행정구역 경제권 중심)	자연부락
설립 인가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가입 자격	조합원	조합원
법인격 부여	법 제16조의 2	법 제16조의 2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장 1인(4년) ✓ 이사 3~5인(4년) ✓ 감사 2인이하(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장 1인(4년) ✓ 간사 1인(4년) ✓ 감사 1인(3년)
재산 소유	어 촌 계	계원 총유
기 구	총회, 이사회	총회, 총대
출 자	출 자 제	-
직 무 대 행	이 사	간 사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사업 ✓ 공동구매사업 ✓ 판매사업 (신용사업 95년 삭제) ✓ 수협, 자금차입 ✓ 간이가공사업 ✓ 후생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업 ✓ 공동구매사업 ✓ 판매사업 ✓ 수협, 자금차입 ✓ 간이가공사업 ✓ 후생복지사업

V. 조사용품 수령

1. 조사원증

- 사업체 방문 조사시 신분확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 반납한다.

2. 사업체 명부

-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구별로 해당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기초자료 이다.
-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내용을 보완하여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 반납한다.

3. 조사표

- 조사표는 농업조사표와 어업조사표 2종이 있다.
- 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보완하여 반드시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 반납한다.

4. 농어업법인사업체 관리명부

- 조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수록하여 조사대상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다.
- 특히 『위치도』와 『위치 설명 및 참고사항』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5. 조사지침서

- 조사지침서에는 조사요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후 2~3번 더 정독하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다.
- 조사기간 중 항상 휴대하여 현장에서 조사지침으로 활용한다.
-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 반납한다.

6. 농작물 부호표

- 조사표 작성시 농수산물 기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 반납한다.

VI. 준비조사 및 본조사

【 준비 조사 】

▶ 변동사업체 확인 및 조사대상 사업체 확정

본 개인 → (공통.) 확인(?)
- 소재불명 재확인. 사업체명(?)

-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명부보완 기간 중에 확인이 미비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소재불명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체명부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현지 방문하여 사업체의 운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농어업법인 담당 팀장은 자체 실사계획에 따라 업무분장을 하고, 임시조사원에게는 『준비조사일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확인 사업체 수를 배정한다.
- 조사원은 배정된 사업체명부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현지방문을 통해 소재불명 사업체의 운영여부 등을 확인한다.
- 변동사업체를 최종 확인·보완하여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를 확정한다.
- 실사대상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일정한 양식으로 4. 19일까지 농수산통계과로 통지한다. (작성방법은 「20쪽 다. 명부보완 방법」 참조)

지방청.사무소 (출장소)	행정구역 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번호	소재지	농어업 구분	조직 형태	운영 여부	운영 주체	변동 상태	비 고

【 본 조 사 】

▶ 조사표 작성

- 조사원은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및 사업체관리명부를 작성한다.
 - 결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체는 결산서 사본 1부를 수집한다.
- 조사원은 조사를 마친 조사표를 팀장(지도요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한다.
- 조사원은 조사가 완료되면 보완한 사업체명부와 조사표를 팀장(업무총괄자)에게 제출한다.

▶ 농어업법인사업체관리명부 작성

- 조사원은 조사대상사업체의 『위치도』와 『위치 설명 및 참고사항』은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아울러 조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수록하여 조사대상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조사표 검토 및 명부정리

- 팀장(업무총괄자)은 완료한 조사표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조사요원이 보완토록 한다.
- 팀장(업무총괄자)은 완료한 조사표 및 명부를 이용하여 사업체명부를 정비한다.

1. 사업체명부 확인, 보완 및 조사대상 확정

가. 사업체명부 배부

조사원의 상주지역과 적정 업무량을 감안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명부를 출력·배부한다.

나. 사업체 소재지 및 유고 여부 확인

- 조사원은 배부받은 사업체명부를 이용, 유고(휴업, 폐업, 사업준비중 등) 여부를 확인한다.
 - 신규발굴 사업체 중 소재불명 사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히 확인한다.
- 최종확인결과 변동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아래 명부보완 방법에 따라 명부를 수정하고, 휴·폐업, 소재불명, 대상외, 사업준비중인 사업체, 개별 운영사업체는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업체명부 보완방법

《법인사업체명부》

① 지방청사무소, (출장소)	② 행정구역번호	③ 사업체번호	④ 사업체명	⑤ 대표자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	⑧ 농어업분류	⑨ 조직형태	⑩ 운영여부	⑪ 운영주체	⑫ 변동상태	⑬ 신/구	⑭ 비고
H1	3302033	H11035	이류위탁 영농조합법인	원서영	043-848 -9007	충주 이류 두정 9-4	1	10	1	1	05	1	H11048번과 중복

① 지방청·사무소(출장소)

- 해당 지방청·사무소(출장소)의 코드를 입력한다.

② 행정구역번호

- 2005.12.31.행정구역 분류코드를 참고하여, 행정구역 번호를 부여한다.

③ 사업체번호

- 사업체 관리 및 업무 편의를 위하여 사업체마다 부여한 고유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업체가 존치하는 기간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 사업체번호는 본청에서 명부작업 완료후 일괄적으로 부여하므로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수정이나 신규코드를 부여할 수 없다.

④ 사업체명

- 사업체명은 공식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본조사 항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입한다.

《 사업체명 기입 예시 》

조직형태	잘못 된 기입 (×)	정확한 기입 (○)
영농조합법인	백운고냉지조합	백운고냉지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무안후계자조합	무안후계자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선진축산합자회사	농업회사법인 선진축산합자회사
일반회사법인	해양수산	주식회사 해양수산
지방자치단체	내수면시험장	경북 내수면개발시험장

⑤ 대표자

- 법인사업체의 경영책임자(대표자) 성명을 기입한다.
- 대표자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대표나 지사, 지점, 사업소의 관리책임자가 해당된다.

⑥ 전화번호

- 전화번호가 2대 이상인 경우 주로 이용하는 대표전화를 기입한다.

⑦ 소재지

- 사업체 소재지의 시도, 시군구 및 법정 읍면동, 가동리명을 기입한다.

⑧ 농어업구분

- 대상사업체가 농업이면 1, 어업이면 2를 기입한다.

⑨ 조직형태

- 사업체명과 조직형태를 파악하여 조직형태 부호를 기입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은 조사대상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조사한다.

[예] 영농조합법인이 주유소를 운영해도 조사대상

- 사업체명이 불분명할 경우 조직형태를 우선하여 조직형태의 부호를 기입한다.

[예] 사업체명이 『영농위탁합자회사』 인 경우 조직형태는 농업회사법인인 것이 일반적임.

- 조직형태의 부호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 조직형태 부호 》

구 분	조 직 형 태	부 호	
농 업	영농조합법인	10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21
		합자회사	22
		유한회사	23
		주식회사	24
		어 업	영어조합법인
공 통	일반회사법인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40	
	생산자단체	50	
	학 교	60	
	기 타	70	

- 농업회사법인은 『20』 으로 개괄적으로 부여하지 말고 세부적(합명, 합자, 유한, 주식)으로 부호를 부여한다.
- ※ 명부보완 완료 후 조직형태 부호에서 『20』 이 있으면 에러이므로 유의 (에러코드 E401)

⑩ 운영 여부

- 2005년 12월말 현재 사업체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
- 사업체의 사업운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해당 부호를 기입한다.

《 운영여부 부호 》

구 분	부 호
- 사업중이다	1
- 사업준비중이다	2
- 사업을 안하고 있다	3

[1] 사업중이다

-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법인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업체의 이익 또는 손해여부와는 관계없다.
- 2005년말까지 사업을 하다가 금년 중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중이다』에 표시한다.

[2] 사업준비중이다

- 법인 설립후 아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사업경영을 위한 시설공사 중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비중인 상태를 말한다.
- 2005년 이전에 설립된 농·어업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사업을 준비중인 경우로서, 명부의 비고란에는 『사업준비중』이라고 기입한다.
- 단, 『신규』 사업체가 『사업준비중』인 경우는 『00년 0월 신설 후 사업준비중』이라고 기입한다.

[3] 사업을 안하고 있다

- 휴·폐업 등으로 2005년 사업실적이 없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준비도 하지 않는 사업체는 사업을 안하고 있다라고 기입한다.

㉑ 운영주체

- 2005년 12월말 현재 사업체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조사한다.
- ㉑조직형태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고, 『㉑운영여부』가 사업중이다인 사업체에 대해서만 파악하여 기입한다.

《 운영주체 부호 》

구 분	부호
-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① <i>1/2</i>
- 출자자 중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한다.	2
- 출자자들이 개인별로 운영한다.	3

[1]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출자자들이 경영에 공동 참여, 노동력을 제공하며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출자자 중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한다

- 법인 경영을 출자자 중 대표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며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에서 출자자는 공동선별(선과) 작업만 하고, 판매 및 회계 등 경상적인 운영을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출자자 중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한다』로 한다.
 - 출자자들은 연말 결산 등 경영실적 및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주주총회 등)에만 참석하며 이윤 배당만을 받고, 사업체 운영은 출자자 중 대표가 단독으로 운영할 때 『출자자 중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한다』에 해당된다.

[3] 출자자들이 개인별로 운영한다

- 법인의 명칭은 있으나, 실제로는 출자자 각자가 법인의 경지, 기계장비 등을 분배하여 생산, 출하 등 일체의 경영을 출자자 각자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별로 운영한다고 조사된 업체는 외형상은 법인이나 실제로는 농·어가임

《 유 의 사 항 》

- ✓ 출자자 중 대표자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초기 출자자본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익을 등기상의 출자자들과 공동으로 분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자자들이 개인별로 운영한다로 기입한다.
- ✓ 출자자 개인별 운영사업체는 등기상 법인으로 존속은 하고 있으나, 누적되는 적자운영 등으로 실제로는 출자자 각자가 농경지, 기계장비 등 법인자산을 이용하여 개인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⑫ 변동상태

- 2005년 12월말 현재 업체의 변동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 변동상태별 보완요령에 따라 변동사항 부호를 기입한다.
- 변동상태가 두가지 이상인 경우 최종상태 부호를 기입하고, 비고란에는 변동상태 모두를 기입한다.

[예] 『00년 00월신규, 00년 0월부터 휴업』
『00년 00월신규, 00년 0월부터 전입』

《 변동상태 부호 》

구 분	부호	구 분	부호
- 폐업	01	- 신규	06
- 휴업	02	- 누락	07
- 대상외	03	- 전입	08
- 소재불명	04	- 전출	09
- 중복	05	- 기타증가 (사업재개등)	10

[01] 폐업

- 법인 설립 후 사업부진 등으로 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법인 청산이 종료된 사업체를 말하며, 명부의 비고란에 『00년 00월 폐업』 이라고 기입한다.
- 단, 실제 해당 법인에서는 폐업이라고 하지만, 정부융자금 미상환 등의 사유로 법적 해산을 못하고 사업중지 또는 방치 중인 법인은 **[02] 휴업**으로 분류한다.

[02] 휴업

- 사업 부진 등으로 2005년 중에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사업 중지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운영재개여부가 불확실한 법인으로 명부의 비고란에는 『00년 00월부터 휴업』 이라고 기입한다.
 - 사업 활동을 재개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기타증가(10)을 부여한다.
- ※ 휴업사업체는 법원의 법인청산 판결없이 향후 경영을 재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장기적으로 사업중지 또는 방치중인 경우를 말한다.

[03] 대상외

- 사업체확인결과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일반회사 법인, 농·축·수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사업장**에 대해서 농·어업과 전혀 다른 산업활동(도·소매, 가공, 금융 등)을 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비고란에는 해당 산업활동 명칭과 함께 대상외라고 기입한다.

[예]제조업으로 대상외

[04] 소재불명

- 해당 주소지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업체는 명부의 비고란에는 『소재불명』이라고 기입한다.

[05] 중복

- 명부상에 사업체명, 대표자 등이 이중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장 또는 사업내용이 각각 다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일 사업체로 판단되면 그 중 삭제할 사업체의 비고란에 『고유번호 0번과 중복』이라고 기입한다.

[06] 신규

- 조사대상기간(2005. 1. 1. ~ 12. 31.) 중에 신설된 농·어업 법인을 말하며 비고란에 『2005년 00월 신규』라고 기입한다.

[07] 누락

- 2005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명부상에 누락된 농·어업법인을 말하며 비고란에 『누락』이라고 기입한다.

[08 / 09] 전입 / 전출 사업체

- 청(사무소, 출장소)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는 비고란에는 『00년 00월 00으로 전출』이라고 기입하고, 지방청·사무소(출장소)로 해당 사업체가 조사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내용을 신속히 통보한다.
 - 전출을 통보 받은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는 확인한 후 이를 사업체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비고란에는 『00년 00월 00부터 전입』이라고 기입한다.
 - 전출 사업체가 전입지에서 조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전출·입 사업체의 조사 누락이 없도록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0] 기타증가(사업재개 등)

- 위 구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로서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⑬ 신/구

- 신규사업체에 대해서 1을 부여하고, 기존 사업체에 대해서는 2를 부여하였으므로 참고한다.

⑭ 비 고

- 신설, 휴·폐업 등 변동사유가 있는 사업체는 비고란에 『00년 00월 폐업』과 같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그 외에 해당되는 사항도 기입한다.

《 사업체명부 입력 시 유의사항 》

- ✓ 사업체명부 입력시 변동상태부호가 폐업(01), 휴업(02), 대상외(03), 소재불명(04), 중복(05)인 경우 반드시 『운영여부』 부호를 『사업을 안하고 있다(3)』로 입력한다.
 - 특히 소재불명(04)이나 중복(05) 시 유의
- ✓ 『변동상태부호』의 기타증가(10) 부호는 반드시 증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력하고, 감소사유의 경우에는 절대 사용금지 한다.
 - 기타(10)인 경우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
- ✓ 사업체명부에서 중복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가장 나중에 것을 중복으로 처리하여 《변동상태부호》에 중복(05) 부호를 입력한다.

[예] (일련번호 20)과 (일련번호 25)가 동일 사업체일 경우 (일련번호 25)를 중복 사업체로 처리하고, (일련번호 20)은 정상사업체로 조사
- ✓ 『운영여부』에 『사업을 안하고 있다(3)』가 나오면 반드시 『변동상태부호』는 01, 02, 03, 04, 05 중 하나여야 한다.

라. 전년대비 사업체명부 증감 코드표

- 사업체 명부 입력이 완료되면 전산내검을 실시한다.
 - 에러 코드표 붙임참조(부록6)
- 에러 코드표 보는 방법
 - 붙임표에서 《조사표 유무》
 - 2004 = 2005 : 전년 금년 명부에 존재하는 사업체
 - 2004 > 2005 : 전년에 있으나 금년은 없는 사업체
 - 2004 < 2005 : 전년에 없으나 금년은 있는 사업체
 - 사업체변동현황
 - 변동없음, 증가, 감소코드는 본청에서만 사용
 -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는 반드시 에러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수정

[예] 점검결과 **E01** 에러코드가 출력되었을 경우 에러코드 수정하는 방법

- 에러코드 : 표를 찾아보면 (조사표 유무 : 2004=2005)에서 전년 사업중이었는데 금년은 사업중이면서 폐업
- 에러사유 : 사업중이면서 폐업인 사업체는 있을 수 없음
- 수정방법 : 확인 후 폐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여부에 사업안함(3)으로 수정

2. 조사표 작성

가.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체 방문 전 사업체명부를 이용하여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조사표에 미리 연필로 표기하여 조사표 작성시간을 줄인다.
-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해당란에 바르게 기입하며, 조사된 내용을 정정할 경우 수정전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선(=)을 그어 수정한다.
198
예) ~~200~~
- 수량 및 금액은 1, 2, 3, ... 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해당란에 바르게 기입하며, 단위미만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예] 200.98평 → 201평, 8.5백만원 → 9백만원
- 상호 연관 항목의 내용도 재검토 후 반드시 일치되도록 한다.
- 해당 사항이 없는 조사항목은 (\\)선을 긋는다.
- 조사항목 중 『기타()』란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한글로 기입한다.
[예] ⑧ 기타(저온저장창고)
- 조사시 나타난 특이사항 및 참고 사항은 조사표 위 혹은 마지막 난의 『적요』에 메모를 한다.
- 숫자는 조사표에 있는 단위에 맞도록 기입하여야 한다.
예) 논벼 수확면적을 2정보, 보리수확면적을 여섯 마지기로 답변한 경우
⇒ 논벼6,000평, 보리 1,200평(1마지기=200평인 경우)
※ 1ha = 3,025평, 1정보 = 3,000평, 마지기당 평수는 지역마다 다름
- 조사표에 사용된 단위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 금액 : 백만원, 면적 : 백평(단, 농작물재배면적은 평임)
- 각 조사항목별로 단위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단위를 확인하여 조사한다.

나. 항목별 작성요령

1) 표지 항목

※ 사업체고유번호		※ 행정구역번호		※ 조사표일련번호	
H O I 2 3 4		3 3 1 0 1 2 3			
① 사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현대영농주식회사	② 대표자명	이 한 길		
③ 전화번호	사무실(사업장) : (043) 647 - 6537				
④ 소재지	충북 시·도 제천 시·군·구 백운 읍·면·동 리 113-2 번지				

☞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 및 사업체 관리, 지역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항목으로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등을 파악한다.

■ 사업체고유번호, 행정구역번호

사업체명부의 내용과 비교·확인하여 이기한다.

■ 조사표 일련번호

조사가 완료된 후,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조사표를 취합하여 농업조사표와 어업조사표를 각각 『1』 번부터 연속으로 사업체고유번호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농업조사표 30매, 어업조사표 12매인 경우 조사표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 농업조사표(1 ~ 30), 어업조사표(1 ~ 12)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체명부상의 내용과 비교·확인하여 이기한다.

■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사업장, 사무실(또는 대표자 자택) 또는 대표자의 휴대폰번호를 기입 한다.

■ 조직형태

농업부문	조직형태	10. 영농조합 20. 농업회사 (21. 합명회사 22. 합자회사 23. 유한회사 24. 주식회사)
		30. 일반회사 40. 국가지방자치단체 (50)생산자단체 60. 학교 70. 기타

어업부문	조직형태	10. 영어조합 (30)일반회사 40. 국가지방자치단체 50. 생산자단체 60. 학교 70. 기타
------	------	--

○ 농어업법인사업체의 조직형태와 이와 연관한 항목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서 조사대상사업체의 해당 조직형태 하나에만 ○표한다.

○ 농협, 축협, 농민단체, 수협, 법인어촌계 등은 『50.생산자단체』로 조사한다.

[예] 임실낙농협동조합생축사업장, 안면법인어촌계 생각없는정인정양리 전국농가

○ 조직형태가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여부는 대부분 사업체명과 대조 확인 가능
 ✕ 하므로 사업체명을 보고 조직형태를 재확인한다. (조직형태 확인)

〈 조직 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업적 농업경영조직이다.(농업농촌기본법)

✓ 영어조합법인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업인 5인 이상이 설립한 협업적 어업경영조직이다.(수산업법)

✓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한 기업적 농업경영조직이다.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상법)

- 사업체명이 『○○주식(유한, 합자, 합명)회사』인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회사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기타 조직형태에 대한 용어정리 ^{14~15} 13~14쪽 참조

《사업체명에 따른 조직형태(예시)》

사업체명	조직형태	
1.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영 농 조 합 법 인 - 영 어 조 합 법 인	10
2. <u>농업회사법인</u> ○○주식회사 ○○위탁영농합자회사	- 농 업 회 사 법 인	21~24
3. ○○농협 종묘사업장	- 생 산 자 단 체(농업)	50

■ 사업체구분

⑥ 사업체 구분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③ 지사·지점·분점			
	▶ 사업체 구분이 「3. 지사·지점·분점」인 경우만 작성			
	본사명	현대영농주식회사	전화번호	(02) 244 - 3456
소재지	서울 시·도 종로시·군·구 경은읍·면·동 리 77번지			

- 농(어)업생산조직의 지역별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아래 유형에 따라 해당란 하나에만 ○표한다.
- 다른 지역에 본점이나 지점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한다.

1. 단독사업체

- 다른 장소에 동일 경영의 지사, 지점, 분점 등이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말한다.

2. 본사·본점

- 다른 장소에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사, 지소, 지점, 분점 및 출장소 등을 1개 이상 두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3. 지사, 지점, 분점

- 다른 장소에 본사를 두고 있어 그 본사의 지시 및 관리하에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여기에 ○표한 사업체는 본사 소재지와 본 조사에 관하여 문의하기에 가장 적정한 부서(예 : 회계과 등)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사업체명에 ○○기업 연구소, ○○기업 출장소(지점, 지사, 사업소) 등의 명칭인 경우에는 『3.지사, 지점, 분점』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별도의 장소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 사업장은 『1.단독사업체』로 조사한다.

■ 종사자수

⑦ 종사자수 (2005. 12. 31.현재)	합 계	상근출자자 (비상근자 제외)	상근고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15	2	1	12

- 출자자의 가족이 임금을 받고 일한 경우에는 근로일수 등에 따라 상근 고용종사자 또는 임시 및 일일종사자로 조사한다.
- ㉠ 무급으로 일한 경우에는 임시 및 일일종사자로 조사한다.
- 조직형태가 일반회사, 국가·지자체, 생산자단체, 학교, 기타인 사업체는 상근 고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만 기입한다.

✓ 상근출자자

- 출자자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한 사람을 말하며, 상근이란 지난 1년중 90일 이상 계속하여 사업체 업무에 종사한 것을 말한다.
- 출자자중 업체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90일이상 계속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출자자만 상근출자자로 조사하며, 결산서감사, 주주총회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에만 참석하는 출자자는 제외한다.
- 작년말 현재 90일미만 근무하였다 하여도 앞으로 계속 상시 근무(예정)할 종사자는 상근출자자로 조사한다.

✓ 상근고용종사자

- 지난 1년중 90일이상 계속하여 사업체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써 법인 설립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작년말 현재 90일미만 근무하였다 하여도 앞으로 계속 상시 근무(예정)할 종사자는 상근출자자 또는 상근고용종사자로 조사한다.

[예] 과장으로 채용된 사람이 작년말 현재 30일만 근무한 경우도 상근고용종사자로 조사한다.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2005. 12. 31.(조사기준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일당 등 부정기적인 노임을 받고, 지난 1년간 90일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다만, 해당 사업체가 조사기준일 현재 임시휴업중(농한기, 금어기 등)인 경우에는 조사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영업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3)

■ 응답자, 조사자, 내용검토자

응답자명	문 성 태	조 사 담당자	이 병 주 (인)	내 용 검토자	조 성 삼 (인)
전화번호	(042) 488-2292				

- 응답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조사자의 이름을 적는다. 내용검토자는 지방청·사무소(출장소) 직원 중 조사표 내용 검토자가 기입한다.

【농업법인사업체 조사표 항목】

본 건별이고 개수 파악

1.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 2005년말 현재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을 기입합니다.

가. 농업시설물		개소 십 개	개소 십 개	나. 농기계		대수 십 개	대수 십 개
① 선과·선별장			⑥ 종균배양장		① 농업용트랙터	2	⑥ 관리기
② 농기계창고	1		⑦ 사료창고		② 동력이앙기		⑦ 동력(살)분무기
③ 농산물건조장			⑧ 기타()		③ 콤바인	1	⑧ 온풍기
④ 농축산물가공공장					④ 경운기		⑨ 농산물건조기
⑤ 축사					⑤ 예취기		⑩ 기타(선별기)



▶ 고장난 농기계도 수리하여 사용가능하면 조사에 포함합니다.

☞ 보유농기계수 및 시설물을 파악하여 법인의 경영규모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다.

가. 농업시설물

- 농업시설물이란 농작업 및 농업가공생산을 하거나 농기계를 수리·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소유 또는 임차에 관계없이 업체에서 사용 중인 농업시설물을 조사한다.
- 도정공장은 농축산물 가공공장에 포함한다.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물
 - 다른 업체에 빌려준 법인소유 농업시설물
 -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

나. 농기계

- 농기계란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체의 동력기계를 말한다.
 - 콤바인 등 농업전용기계 이외에 트럭, 비행기 등 다른 산업에도 이용될 수 있는 기계가 주로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계와 수동식 농기계는 제외한다.
 -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일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조사한다.
 - 현재 고장 중이지만 앞으로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하거나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농기계는 조사에 포함한다.
- 일시적으로 남에게 빌려주었거나 다른 곳에 보관 중인 농기계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2. 경영 경지면적

→ 2005년말 현재 법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지면적을 기입합니다.

구	분	2005. 12 월 말												
		법인 소유 면적					임차 면적							
		백만	십만	만	천	백평	백만	십만	만	천	백평			
①	논			1	2	0	0							
②	밭				8	0								
	㉠ 과 수 원													
③	목 초 지													
④	합 계 [①+②+③]			1	2	8	0							

▶ 법인 소유면적은 법인소유의 경지중 임대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합니다.

▶ 임차면적에는 농가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법인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을 조사합니다.

- 법인의 경영규모를 파악하여 관련항목과 연계, 생산성 및 성장가능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 경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토지를 말하며, 실제로 이용되는 지목에 따라 논, 밭, 과수원, 목초지로 세분하여 기입한다.
- 영농회사 등이 위탁을 받아 경작하는 경영경지 면적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① 논

논이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관개배수 시설을 갖추고, 물을 대어 논벼, 미나리, 연뿌리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지를 말한다.

② 밭

밭이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관개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지를 말하며, 과수원, 수원지 등을 포함한다.

- 산에 밤 또는 감나무를 심은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 목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나무를 심은 밭은 지목이 밭이라도 제외한다.

③ 목초지

목초지란 사료, 가축 방목을 위해 풀씨를 뿌려 재배 또는 기존 목초를 보호·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 1년생 사료작물을 심은 경지는 밭으로 간주하여 해당 재배면적을 밭면적에 포함 조사한다.
- 산이나 들의 자연생 목초를 어떠한 보호·관리없이 자연상태로 벨 수 있는 곳은 제외한다.
- 목초지는 있는데 가축이 없거나, 가축은 있는데 목초지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다.

3.

농작물 재배면적

→ 2005년 중 농작물별 재배면적을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가. 노지재배 작물명	부호	재배면적						나. 시설재배 작물명	부호	재배면적						번호	특용작물(약용, 전채작물포함)	번호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평	백만	십만	만	천	백			
①논 벼	01			12	000		①채소류	06			1	00		01	특용작물(약용, 전채작물포함)	08		
②밭류	02			6	000		②							02	화훼	09		
③							③							03	사료작물(호밀, 옥수수 등)	10		
④							④							04	종자, 종묘(벼묘, 채소묘 등)	11		
⑤							⑤							05	벼섯	12		
합계	99			18	000		합계	99			1	00		06	기타	13		
														07	과수(사과, 배, 포도 등)			

▶ 2005년도 생산실적이 없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면, 재배면적을 기입합니다.

가. 노지재배

- 2005년중 노지에서 재배한 작물별 면적을 파악한다.
- 노지재배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상태의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일체의 농업방법을 말한다.
 - 단, 터널재배와 비닐피복 재배(멀칭)와 같이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할 수 없는 시설물은 노지재배에 해당한다.

나. 시설재배

- 시설재배란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말한다. 따라서, 터널재배와 비닐피복 재배(멀칭)와 같이 사람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없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일시적 시설 또는 영구적 시설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시설재배에 포함하며, 지난 1년간 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한 면적을 재배작물별로 조사한다.
- 기타 작성내용은 「가. 노지재배」 작성요령에 준한다.

- ✓ **터널재배**
이랑 위에 터널 모양으로 대나무나 철사를 걸쳐 보온관리를 하는 재배방법이다.
- ✓ **멀칭재배**
짚이나 비닐 등으로 포장을 덮어서 토양관리를 하는 재배방법이다.

다. 농작물 재배면적 조사요령

- 농작물이란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식량작물, 채소작물, 화훼, 과수, 버섯 등 일체의 식물을 말한다.
- 재배면적에는 2005년에 이미 수확한 작물의 재배면적이나 전년 파종을 하고 현재까지 재배 중인 작물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며, 이때 재배면적은 두렁면적도 포함한다. 재배형태별 재배면적 조사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사한다.

〈회계작성은 작물면적 조사!〉

- (연작면적) 같은 작물을 1년에 2회 이상 연작하는 경우에는 횡수별 재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조사한다.

[예] 작년에 밭에서 상추를 500평씩 3회 재배한 경우 1,500평으로 조사한다.

- (혼작면적)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작물을 이랑을 달리하여 재배하였거나, 다른 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미리 이랑을 넓혀 재배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작물면적의 점유 비율에 의하여 재배면적을 추정한다.

[예] 면적이 1,000평인 밭에 콩을 40이랑, 옥수수 160이랑을 재배한 경우

⇒ 콩 재배 면적 : $1000\text{평} \times 40 \div 200 = 200\text{평}$

⇒ 옥수수 재배 면적 : $1000\text{평} \times 160 \div 200 = 800\text{평}$

- (간작면적) 과수원에 간작으로 작물을 재배한 경우 밭의 총면적을 과수면적으로 조사하고, 간작한 작물은 실제 재배한 면적만 조사한다.

[예] 1000평의 복숭아 과수원에 고구마를 300평 간작한 경우

⇒ 복숭아 1000평, 고구마 300평으로 조사한다.

- 작물명은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부록 농작물부호표》를 참조하여 작물의 분류부호를 기입한다.

[예] 조사표에 열거한(논벼, 맥류, ..., 버섯)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타(부호: 13)로 조사한다.

- 농작물의 종자, 벼묘, 채소묘, 버섯종균 등을 생산하는 경우, 먼저 노지재배인지 시설재배인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 종자, 종묘(벼묘, 채소묘, 버섯종균, 화초종자·종균, 과수용 묘목 등(11))로 조사하고, 관상수는 기타(13)로 조사한다.

▶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가금의 사육두수와 지난 1년 동안의 판매두수를 기입합니다.

종	류	사육두수(2005. 12월말)					연간 판매두수				
		십만	만	천	백	십 마리	십만	만	천	백	십 마리
① 한	육				20				100		
② 젖	소										
③ 돼	지										
④	닭					백마리				백마리	
⑤ 꿀	벌					통				통	
⑥ 기타()											

▶ 젖소는 암소만을 기입하시고, 숫소는 한육우에 포함합니다.

▶ 송아지, 병아리 등 새끼도 마리수에 포함합니다.

▶ 닭은 「백마리」, 꿀벌은 「통」 단위로 기입합니다.

▶ 기타는 곰, 파충류, 곤충류, 양서류, 환경동물, 양잠업을 포함합니다.

- 직접 판매, 원재료(축산물 가공생산용) 및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물만 조사한다.
 - 애완용이나 관상용으로 기르는 가축 및 가금은 조사하지 않는다.
- 양계장에서 병아리를 부화시켜 사육하는 업체는 조사하되, 병아리를 부화시켜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화장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새끼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 예) 병아리는 닭으로, 송아지는 소로 조사한다.
- 벌통 수는 벌이 있는 벌통만 조사하며, 이동 사육하는 경우 월동을 위하여 다른 곳에 일시 보관하는 것도 조사한다.
- ⑥ 닭은 「백마리」, 꿀벌은 「통」 이 조사단위 이므로 작성에 특히 유의한다.
 - 사육장에 가공판매한 마릿수를 표시
- 조사표상에 열거한 사육 축종이외에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⑥ 기타() 안에 대표적인 축종을 기입한다.
- 젖소는 암소만을 기입하고, 숫소는 한육우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등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다음 항(5항)부터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법인만 조사합니다.

5. 농업경영 개시년도

▶ 법인설립년월과 법인으로서는 농업을 처음 개시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가. 법인설립년월 **1998년 5월** 나. 농업경영개시년월 **1998년 12월**

▶ [나. 농업경영개시년월]은 법인설립 후 농업경영을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 사업체가 농업활동에 참여한 시기를 조사하여 관련 항목과 연결, 동 부문에 대한 사업의 안정성 등을 파악하는 항목이다.

가. 법인 설립년월

○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연월을 기입한다. (036)

나. 농업경영 개시년월

○ 법인 설립 후 농업 활동을 처음 개시한 연월을 기입하며, 만약 법인 설립 이전부터 농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가.법인설립년월≫ 을 기입한다.

6.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포지의 [사업체 구분]에서 [1. 단독사업체] 또는 [2. 본사·본점]에 표한 법인만 조사합니다.

가. 출자자수 및 출자금(자본금)						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출자자수			출자금(자본금)계			구 분	2005. 12 월 말						
	2005. 12월말	천 백 십 명개		2005. 12 월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농업인		1	0			2	0							
②비농업인			5			1	0							
③생산자단체														
④합계[①+②+③]		1	5			3	0							

▶ 출자자란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주주로서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한 사람 (기관)을 말합니다.
▶ 농업인이란 300평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출자자수 및 출자금(자본금)

☞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의 참여도 파악 및 출자자당 법인의 출자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 출자자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준조합원) 중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한 사람들은 모두 조사한다.

- 법원등기에는 출자자의 대표자 일부만 등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예] 법원 등기에는 출자자 중 대표 5명만 등재되었으나, 그 외 조합원 중 150명이 출자를 한 경우

⇒ 대표 5명과 출자 조합원 150명을 합하여 155명으로 조사

- 출자금(자본금)계에는 현물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 본 항목의 『출자금(자본금)계의 ④합계란』은 『8-다 자산, 부채와 자본』의 I. 자본금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조직형태별 출자자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므로 조사에 참고한다.

《조직형태별 출자자의 명칭》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자자명칭	조합원, 준조합원	사원, 주주
출자자명부	조합원, 준조합원명부	사원명부, 주주명부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조직형태별로 최소의 출자금(자본금)과 출자자(주주)가 필요하므로, 2005년 신규사업체의 출자금 및 출자자수 조사 시 이를 참고한다.

《조직형태별 최소 출자금(자본금)과 출자자(주주)》

구 분	영농조합 법 인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출자자수	5명이상	2명이상	2명이상	2명~50명	3명이상
출 자 금	-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 농업인

- 300평(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 농지에 약100평(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농막, 간이 퇴비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통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 생산자단체

-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농협, 임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

☞ 법인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을 조사하여 정부지원규모와 그 효과분석을 위한 항목이다.

- 정부지원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 정부보조금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정책자금을 말한다.
 - 정부융자금은 정부에서 농·축협 등을 통하여 융자된 정책자금을 말하며, 담보물을 설정하고 농·축협으로부터 자체 대출한 융자금은 제외한다
- 2005년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 누계액중 조사대상 기간(2005.1.1.~12.31.) 중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말한다.

『2005년 정부보조금』 <= 『정부보조금 누계』

- 본 항목의 『정부융자금잔액』은 『8-다 자산, 부채와 자본』에서 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와 비교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 현물출자 내역이 장부에 평가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가. 농업생산수입					나.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작물재배업				100			④	농축산물가공업						
②	축산업							⑤	농축산물유통업						
③	합계 [①+②]				100			⑥	영농대행수입액						
* 판매 또는 수입유형								⑦	농업서비스업						
(판매 및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⑧	기타사업수입						
								⑨	합계 [④+...+⑧]						

▶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모두에 각각 조사합니다.

▶ 농업서비스업이란 선과, 선별 등 농업관련서비스를 말합니다.

▶ 판매 및 수입실적이 전혀없는 경우에는 「판매 또는 수입유형」 옆 빈칸에 「가」 및 「나」의 세부유형부호 「①, ②, ④~⑧」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 연중 판매액을 조사하여 사업수지사항과 결합, 법인의 경영실태 및 각종 경영분석 지표를 생산하는 기본항목이다.

○ 장부 미기장 업체도 종사자 수, 사업체 규모 등을 비교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 결산서는 금액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백만원』이므로 금액 단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 『8.경영실태-라.사업수지사항』을 세분한 것으로, 상호 비교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지사항을 조사한 업체는 판매액 총합계[농업생산수입 ③합계+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⑨합계]와 『라.사업수지사항』의 『I.매출액』이 일치되어야 한다.

✓ ○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며 각각 판매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유형별로 각각 조사한다.

[예] 농작물생산에서 시설재배와 가축사육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① 작물재배업과 ② 축산업에 대한 각각의 판매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 ○ 생산한 농산물을 일부는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가공 판매하는 경우

『가.농업생산수입』의 ①작물재배업과 『나.농업생산이외의 사업수입』의 ④ 농축산물가공업에 각각 조사되어야 한다.

[예] 과실재배 과일 직접 판매 : 『가-① 작물재배업』

과일쥬스 가공판매 : 『나-④ 농축산물가공업』

○ 영농을 대행하여주고 받은 수입은 『나-⑥ 영농대행 수입액』으로 조사한다.

⑤ ※ 판매 또는 수입유형은 판매 및 수입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세부유형부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예] 축산업 인데 판매나 수입 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2** 를 기입한다.

① **작물재배업**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곡물, 채소, 화훼, 시설작물, 정원수, 분재 등 작물 재배

② **축산업**

-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해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소, 양돈, 양계 등 가축 사육과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등

⑥ **영농대행 수입**

- 농가나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말한다.

- 농가 또는 다른 사업체에게 단순히 농기계만을 임대해 주고 그 임대료를 받을 경우 영농 대행업으로 보지 않는다.

⑦ **농업서비스업 수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다음의 농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 작물 생산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예] 과실선과장운영, 농산물건조장운영, 농업용수공급 등

- 축산관련 서비스업 : 축산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예]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인공수정, 거세서비스 등

⑧ **기타 사업수입**

- 냉장 및 냉동창고업 등 기타 사업수입이다.

가. 회계장부 작성 여부		나. 사무실 사용 여부				
회 계 장 부 작 성	○표	사 무 실 사 용		소유	임차	무상
결 산 서 (재 무 제 표) 작 성	①	사	단 독 사 용	①	2	3
간 이 장 부 만 작 성	2	용	공 동 사 용	4	5	6
장 부 를 작 성 하 지 않 음	3	사 무 실 없 음		7		

▶ 가. 회계장부 작성여부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단독사업체] 또는 [본사·본점]인 법인만 조사합니다.
- 일반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지사·지점·분점]인 경우에도 모두 조사합니다.

- ▶ 나. 사무실 사용여부는 사무실 사용형태 중 주된 것 하나에만 ○표합니다.

가. 회계장부 작성여부

☞ 『가. 회계장부 작성 여부』의 『결산서(재무제표) 작성 1』에 ○표한 법인은 결산서 수집 여부를 파악하여 경영실태 다~라항(자산, 부채와 자본과 사업수지 사항)의 작성여부를 결정하고, 그 정도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항목이다

- 결산서(재무제표) 작성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결산서(재무제표) 작성(1)』에 ○표한 법인은 법인으로부터 결산서 사본 1부를 수집한다.
- 결산서 수집내용
 - 당기(2005년도) 실적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단, 2005년도 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 조사표 『적요』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간이 장부만 작성이란 금전출납부 등을 이용하여 단식부기방식으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체구분」에서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인 법인만 조사한다. *단) 지점이라도 별도 결산서 조사항*
- 일반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체구분」에서 「3.지사·지점·분점」인 경우에도 모두 조사한다.

나. 사무실 사용여부

- ☞ 사업체가 어떤 형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2005년도 사무실 사용형태 중 하나만 ○표한다.
- 한 업체에서 법인소유 사무실과 임차 사무실을 같이 사용할 때는 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표한다.
- 법인소유란 법인자산의 건물 등에서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단독사용·소유(1)」에 ○표한다.
- 법인이 출자자 개인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면, 「단독사용·임차(2)」에 ○표한다.
- 출자자의 개인건물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공동사용·무상(6)」에 ○표한다.
- 콘테이너박스, 비닐하우스 등 임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무실 없음(7)」에 ○표한다.

다. 자산, 부채와 자본

다. 자산, 부채와 자본							
◆ 2005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자본을 기입합니다.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I.	유	동	자 산			8	5 0
II.	고	정	자 산			2	1 6 6
자 산 총 계 [I + II]						3	0 1 6
I.	유	동	부 채			3	6 9
II.	고	정	부 채			1	3 3 5
부 채 총 계 [I + II]						1	7 0 4
I.	자	본	금			1	0 0 0
II.	잉	여	금 등			3	1 2
자 본 총 계 [I + II]						1	3 1 2

▶ 결산마감월이 12월이 아닌 업체는 결산서대로 기입하시고 결산월을 적요란에 기입합니다.

▶ 관련 항목이 없을 때는 사선()을 그어 주십시오

▶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 ☞ 지난 1년간 법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경영실적을 조사하여 생산성, 수익성 등 농어업 법인의 경영분석지표를 생산, 동 부문의 성과분석과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한다.

- 『다. 자산, 부채와 자본』, 『라. 사업수지사항』은 본사에서 일괄 조사한다. 단, 본사가 보조단위로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사에서 일괄 조사한다.

〈 조사항목별 관련 결산서 〉	
✓ 『다. 자산, 부채 및 자본』	: 대차대조표
✓ 『라. 사업수지 사항』	: 손익계산서

- 2005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조사한다.

✓ 『I.유동자산』	= 당좌자산 + 재고자산
✓ 『II.고정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II.잉여금 등』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 『I.자본금』	= 6-가-④ 출자금(자본금) 합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 기준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흐름을 기록한 결산서(재무제표)이다.
- 경영실적에서 사용되는 조사항목과 용어는 기업의 결산서(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을 통합·축소한 것이므로 반드시 결산서와 대조(또는 결산서에 준)하여 해당 항목에 기입한다.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종류는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으며, 이 조사표는 보고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조사한다.
- 2005년(당기)를 조사하므로 결산서상의 회기를 반드시 확인하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단에 표시된 결산기간이 연간인지 반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연간단위로 조사한다.
 - 최종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예 : 4월, 9월 등)는 최근 결산서를 기준으로 조사하며 결산월을 「적요」란에 기입한다.

[예] 결산월이 9월인 업체는 2004. 10월부터 2005. 9월까지를 조사한다.

대 차 대 조 표	손 익 계 산 서
제__기 2005년__월__일현재	제__기 2004년__월__일부터 2005년__월__일까지

- 『잉여금 등』이 손실일 때는 반드시 금액 앞에 (-)표시를 하고, 해당 조사항목명 여백에 손실이라고 기입한다.
- 결산서의 금액단위는 원, 조사표는 백만원이므로 단위에 특히 유의한다.

라. 사업수지 사항

라. 사업수지 사항		천억				백억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I.	매출액			1	4	2	3
II.	매출원가			1	2	4	0
III.	매출총이익(손실) [I - II]					1	8
IV.	판매비와관리비				1	3	0
V.	영업이익(손실) [III - IV]						5
VI.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2	2
VIII.	경상이익(손실) [V + VI - VII]						3
IX.	특별이익						
X.	특별손실						
XI.	법인세						
XII.	당기순이익(손실) [VIII + IX - X - XI]						3

▶ 결산마감월이 12월이 아닌 업체는 결산서대로 기입하시고 결산월을 적요란에 기입합니다.

▶ 관련 항목이 없을 때는 사선(\)을 그어 주십시오

▶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업체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조사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 『다. 자산, 부채와 자본』, 『라. 사업수지사항』은 본사에서 일괄 조사한다. 단, 본사가 보조단위로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사에서 일괄 조사한다.

〈 조사항목별 관련 결산서 〉

- ✓ 『다. 자산, 부채 및 자본』 : 대차대조표
- ✓ 『라. 사업수지 사항』 : 손익계산서

- 『IV. 판매비와 관리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 수선 및 수리비 등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 『VI.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임대수입(임대료) 등을 포함한다.
- 『VII.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지급이자), 유가증권처분 및 평가손실 등을 포함한다.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이 손실일 때는 반드시 금액 앞에 (-)표시를 하고, 해당 조사항목명의 손실에 ○표한다.

【어업법인사업체 조사표 항목】

1. 양식장 시설

▶ 양식장시설을 보유하고 예수면양식 또는 내수면양식을 경영하는 경우, 2005년말 현재 경영하고 있는 양식장의 시설면적을 기입합니다.

구	분	시설면적			
		십만	만	천	백평
①	어 류			1	0
②	패 류				
③	해 조 류				5
④	갑 각 류				
⑤	기 타 수 산 동 식 물				
⑥	합 계 [① + ... + ⑤]				5

▶ 시설면적이란 어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기 위한 수족관, 그물망등 시설의 실제 면적을 말합니다.

- 사료 및 어자재창고, 사무실 등 부대 시설은 제외

▶ 「ha」를 사용하고 있으면 「평」으로 환산하여 기입하십시오.

(1ha = 3,025평)

- 양식이란 수입을 목적으로 어패류, 갑각류 및 해조류 등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기르는 방법을 말하며, 양식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양식장이라고 한다.
 - 여기서는 해면양식과 내수면양식을 구분 없이 모두 조사한다.
- 어류는 물고기 무리로 지느러미가 있고 수중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으로 가자미, 메기, 향어, 송어, 가물치, 뱀장어, 잉어, 붕어, 미꾸라지, 은어 등이 있다.
- 패류는 조개의 종류로 전복류, 굴류, 조개류, 고동류, 고막류 등이 있다.
- 갑각류는 대개 물 속에서 살며 딱딱한 등딱지로 덮여있으며 게, 가재, 새우 등이 있다.
- 해조류는 바다 속에서 생산되는 조류의 총칭이며,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툫 등이 있다.
- 패류, 갑각류 및 해조류는 응답자가 면적이 아닌 시설대수(책수)로 응답할 경우 아래 시설기준을 참고하여 평으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 시설기준에 비해 시설 면적이 부당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에는 재확인한다.

《 해면양식장 1ha당 시설기준 》✓

양 식 종 류	구분	1ha당 시설기준
굴 연승수하식	대	20대
굴 뗏목수하식	대	6대
김, 파래 지주식	책	20책
김, 파래 부류식	책	25책
미역, 툫, 다시마, 우렁쟁이 연승수하식	대	20대
가두리식	조	20조

가. 보유 어선척수				2005.12 월말		
구	분			백	십	일
①	동	력	선			5
②	무	동	력			1
③	선	외	기			
④	합	계 [① + ② + ③]				6

▶ 2005. 12월말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어선 척수를 기입합니다.
 - 법인소유의 어선이지만 남에게 임대한 어선은 제외하되, 임차하여 사용하는 어선은 포함합니다.

- 동력선이란 추진기관을 선체 내에 고정 한 어선을 말한다.
- 무동력선이란 추진기관을 선체에 부착하지 않은 어선을 말한다.
- 선외기선이란 무동력선에 추진기관을 선체 밖에 탈·부착이 가능한 어선을 말한다.
 - 갑판선단에 프로펠러를 설치하는 선내외 기부선은 동력선으로 조사한다.

〈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어선 〉

- ✓ 어선 등록을 하였으나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어선
 - 사용 가능한 어선을 일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에 포함
 - 현재 고장 중이지만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어선은 조사에 포함
- ✓ 어선 등록을 하였으나, 주로 어업생산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어선
 - 유어(遊漁 낚시 등)로 주로 사용된 배
 - 어업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탐재선
 - 돈을 받고 운반업만 하는 선어 운반선 등

나. 동력어선 내역								
나-1. 톤수별			나-2. 선령별			나-3. 연중출어일수별		
구분	척수		구분	척수		구분	척수	
	십	일		십	일		십	일
① 10톤 미만		3	① 5년 미만		2	① 30일 미만		1
② 10~20톤		2	② 5~10년		2	② 30~60일		2
③ 20~50톤			③ 10~15년		1	③ 60~90일		2
④ 50~100톤			④ 15~20년			④ 90~180일		
⑤ 100톤이상			⑤ 20년이상			⑤ 180일이상		
⑥ 합계		5	⑥ 합계		5	⑥ 합계		5

◆ 상기 「가. 보유어선척수 중 ①동력선」을 톤수별, 선령별 및 연중 출어일수별로 분류하여 기입합니다.

▶ 선령은 선박을 건조하여 진수한 날로부터 2005년말까지 경과년수를 만으로 기입합니다.

▶ 연중출어일수는 지난 1년간(2005년) 어업 생산활동을 위하여 출어한 일수를 기입합니다.

- 선박의 톤수 단위는 G/T(Gross Tonnage 총톤수)이다.
- 선령은 선박을 건조하여 진수된 날로부터 2005년까지의 경과년수를 만으로 조사한다.
- 연중출어일수는 지난 1년간(2005년) 어업 생산활동을 위하여 출어한 일수를 조사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등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다음의 항(3항)부터는 영어조합법인 및 일반회사법인만 조사합니다.

3. 어업경영 개시년도

▶ 법인설립년월과 법인으로서 어업을 처음 개시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가. 법인설립년월 2001년 11월 나. 어업경영개시년월 2002년 3월

▶ [나. 어업경영개시년월]은 법인설립 후 어업경영을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 사업체가 어업활동에 참여한 시기를 조사하여 관련항목과 연결, 동 부문에 대한 사업의 안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항목이다.

가. 법인 설립년월

-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연월을 기입한다.

나. 어업경영 개시년월

- 법인설립 후 어업 활동을 처음 개시한 연월을 기입하되, 법인설립 이전부터 어업을 경영한 경우는 법인설립년월을 어업경영 개시 년월로 기입한다.

4.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영어조합법인 중 표지의 [사업제 구분]에서 [1. 단독사업제] 또는 [2. 본사·본점에 ○표한 법인만 조사합니다.]

가. 출자자수 및 출자금(자본금)				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출자자수		출자금(자본금)계		구 분	2005. 12 월말		
	2005. 12월말	2005. 12 월말	2005. 12 월말	2005. 12 월말		천	백	십
① 어업인	10		20		① 현물출자			9
② 비어업인	5		10		② 정부보조금누계			2
③ 생산자단체					③ 2005년 정부보조금			1
④ 합계(①+②+③)	15		30		③ 정부융자금잔액			8

▶ 출자자란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주주로서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한 사람(기관)을 말합니다.

▶ 어업인이란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출자자수 및 출자금(자본금)

☞ 법인에 출자한 어업인의 참여도 파악 및 출자자당 법인의 출자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5인 이상의 출자자(주주)가 필요
- 출자자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준조합원) 중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한 사람들은 모두 조사한다.
- 법원등기에는 출자자의 대표자 일부만 등재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예] 법원 등기에는 출자자 중 대표 5명만 등재되었으나, 그 외 조합원 중 150명이 출자를 한 경우

⇒ 대표 5명과 출자 조합원 150명을 합하여 155명으로 조사

- 출자금(자본금)계에는 현물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 본 항목의 『출자금(자본금)계의 ④합계란』은 『6-다 자산, 부채와 자본』의 I.자본금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 **어업인**
 -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 ✓ **생산자단체**
 - 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수협 등을 말한다.

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

☞ 법인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을 조사하여 정부지원규모와 그 효과분석을 위한 항목이다.

- **정부지원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 정부보조금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정책자금을 말한다.
 - 정부융자금은 정부에서 농·축·수협 등을 통하여 융자된 정책자금을 말하며, 담보물을 설정하고 농·축·수협이 자체 대출한 융자금은 제외한다
- 『**2005년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 누계액중 조사대상기간(2005.1.1.~12.31.)중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말한다.

『2005년 정부보조금』 <= 『정부보조금 누계』

- 본 항목의 『정부융자금잔액』은 『6-다.자산, 부채와 자본』의 부채총계(유동부채+고정부채)와 비교하여 반드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 현물출자 내역이 장부에 평가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지난 1년간 (2005년도) 어업생산 및 어업생산이의 사업에 의한 판매(수입)액을 유형별로 기입합니다.

가. 어업생산수입				나. 어업생산이의 사업수입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	원양어업					5	5
②	근해어업						
③	연안어업						
④	해수면양식어업						
⑤	내수면어업						
⑥	합계(①+...+⑤)					5	5
⑦	수산물가공업						
⑧	어업서비스업						
⑨	수산물유통업						
⑩	기타사업수입						
⑪	합계(⑦+...+⑩)						
※ 판매 또는 수입유형							
(판매 및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모두에 각각 기입합니다.

▶ 어업서비스업이란 어류선별 등 어업관련서비스를 말합니다.

▶ 판매 및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판매 또는 수입 유형」 옆 빈칸에 「가」 및 「나」의 세부유형부호 ①~⑤, ⑦~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연중 판매액을 조사하여 사업수지사항과 결합, 법인의 경영실태 및 각종 경영분석 지표를 생산하는 기본항목이다.

- 장부 미기장 업체도 종사자수, 사업체 규모 등을 비교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 『6.경영실적-라.사업수지사항』을 세분한 것으로, 상호 비교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지사항을 조사한 업체는 **판매액 총합계[어업생산수입 ⑥합계+어업생산이의 사업수입 ⑪합계]**와 『라.사업수지사항』의 『I.매출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며 각각 판매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유형별로 각각 조사한다.

[예] 어업생산수입에서 근해어업과 내수면을 동시에 하는 경우 ②근해어업과 ⑤내수면어업에 대한 판매액을 각각 조사
- 생산한 수산물을 일부는 직접 판매하고, 일부는 가공 판매하는 경우 『가. 어업생산』과 『나. ⑦ 수산물가공업』에 각각 조사되어야 한다.

[예] 근해어업을 하면서 콩치 통조림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콩치 직접 판매 : 『가. 어업생산수입 중 ②』
 콩치 통조림 판매 : 『나. 어업생산이의 사업수입 중 ⑦』
- ※판매 또는 수입유형은 판매 및 수입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세부유형부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예] 수산물유통업인데 판매나 수입실적이 전혀 없을 경우 9 를 기입한다.

6. 경영실태

【 농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표 】 43p~46p 참조

【 농어업법인사업체 관리명부 】

위 치 도	작성년월	2006. 4. 5	작성자	홍길동	확인자	신청어
<p>※ 위치 설명 및 참고 사항</p> <p>▷ 승용차 이용시 - 사무소 출발 제주공항 가기전....</p> <p>▷ 버스 이용시 - 250번 타고 하나마을에서 하차...</p> <p>□□ 회계사 (tel000-0000)</p>						
사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L 0 1 1 9 4	제주충남영농조합법인	김동욱	011-281-9997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265-2		
조직형태	영농조합	사업체구분	단독	설립년월일	2003. 10. 20	변동년월일
						변동사유

농어업법인사업체 관리명부

- ☞ 농어업법인사업체에 대한 기본사항을 수록하여 조사대상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체고유번호가 부여된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작성한다.
 - 단 조사표 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체는 위치도 등 조사가 되지 않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위치도』와 『위치 설명 및 참고사항』은 해당 사업체를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참고사항에는 결산사업체의 회계사무소명이나 전화번호 등 기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메모한다.
- 『사업체고유번호』 ~ 『설립년월일』은 사업체명부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편철은 사업체고유번호 순으로 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VII. 조사 시 상황별 대처 방법

1. 조사대상사업체가 조사관할 지역 밖으로 진출하였을 경우

- 조사 대상사업체가 주소만 옮겼을 뿐 실제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변경전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조사한다.
-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진출된 관할지역 지방청·사무소(출장소)와 본청 농수산통계과로 스마트플로우(우편)으로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생즉시 통보하고, 사업체 명부는 『변동상태』를 진출(09)로 처리한다.

〈 진출 사업체 현황 통보 양식〉

일련 번호	지방청사무소 (출장소)	행정구역 번호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출지역	전출지역 지방청사무소 (출장소)	전화 번호	비고
52	G1	3202056	G10123	상하영농 조합법인	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458-2번지	I2	042-935-0000	

- ✓ 일련번호~대표자 : 사업체명부에서 작성
- ✓ 진출지역~비고 : 진출 관할지역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조사에 참고될 사항들을 파악하여 통보

2. 조사대상사업체가 조사관할 지역으로 전입하였을 경우

- 조사중 전입 사업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전입 전 해당 지역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 조사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 타지역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진출 사업체 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체의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체명부에 새로 등록(『변동상태』를 전입(08))하여 정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양식에 의거하여 본청 농수산 통계과로 스마트플로우(우편)으로 통보한다.
- 사업체 고유번호는 기존번호(본청에서 입력)를 사용한다.

〈 전입 사업체 현황 통보 양식〉

일련 번호	지방청사무소 (출장소)	행정구역 번호	사업체 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번호	전지역 지방청 사무소(출장소)	조사대상 여부	비고
52	I2	3403035	G10123	상하영농 조합법인	김○○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458-2번지	042-935 -0000	G1	조사 대상	

- ✓ 일련번호~전화번호 : 사업체명부에서 작성
- ✓ 전 지역 지방청·사무소(출장소) : 전입 전 해당지역 지방청·사무소(출장소)
- ✓ 조사대상여부 : 조사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작성
- ✓ 비고 : 참고사항

3. 조사대상사업체가 조사대상외사업체(폐업, 휴업, 대상외, 소재불명, 중복, 개별 운영 등)로 변경되었을 경우

- 조사기준일(2005.12.31.)까지 정상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 변경 되었을 경우 변동 처리 없이 조사한다. *※ 조사 개인사업 일기에서 조사*
- 사업체명부 보완시 착오나 확인 미비로 인한 것일 경우 사업체명부 보완방법(20p 참조)에 의거하여 사업체명부를 정비한 다음 아래 양식에 의거 4. 19일 까지 그 결과를 농수산통계과로 보고한다.

4. 신규 사업체가 새로 발굴되었거나 조사대상외였던 사업체가 조사대상사업체로 변경되었을 경우

- 조사기준일(2005.12.31.)까지 조사대상외였던 사업체였으나 그 이후 변경 되었을 경우 변동 처리 없이 조사에서 제외한다.
- 사업체명부 보완시 확인 미비였거나 조사기준 시점에서 신규 사업체가 새로 발굴되었을 경우 사업체명부 보완방법(20p 참조)에 의거하여 사업체명부를 정비한 다음 아래 양식에 의거 4. 19일 까지 그 결과를 농수산통계과로 보고한다.

《 사업체 변동현황 보고양식》

증감 사유	일련 번호	지방청·사무소 (출장소)	행정구역 번 호	사업체 번 호	사업체명	소재지	농어업 구 분	조직 형태	신/구	사유	비 고
증가	75	H1	3302033	H11035	이류위탁 영농조합법인	충주 이류 두정 9-4	1	10	1	07	명부보완시 착오
감소	110	H1	3302055	H11065	삼류위탁 영농조합법인	충주 삼류 두정 9-4	1	10	2	03	조사 중 사업체 발굴

- ✓ 일련번호~사유 : 사업체명부에서 작성
- ✓ 비 고 : 사업체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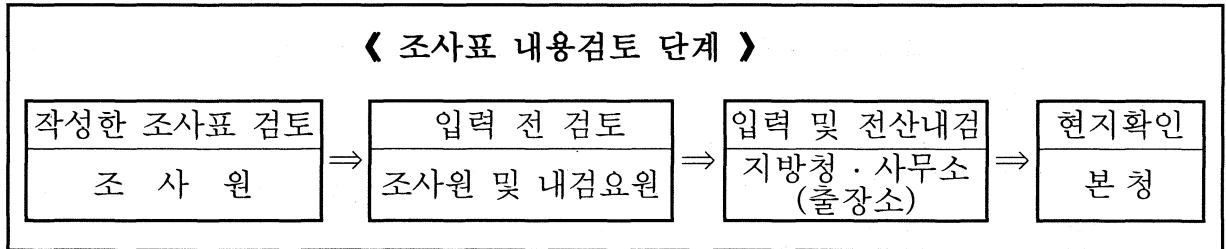
※ 명부 보완시 { 위고(이, 아, 야만) 등으로 사업체번호가 미부되었으나, 크리에비정(02.06.09) 등으로 추가 사업체번호 부여되어야 할 경우 반드시 기입.

VIII.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제출

1. 조사표류 내용검토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작성한 조사표 중에는 조사항목 누락, 조사단위 착오, 관련 항목간의 불일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 단계마다 조사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한다.



○ 조 사 원

- 작성한 조사표는 조사 현장에서 착오내용이 없는가 확인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응답자에게 재확인한다.
- 조사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항상 실사지도원 등에게 문의하여 잘못 조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한다.
- 조사표 연관 항목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착오 내용이 발견되면 사업체를 재방문하여 확인·보완한다.
- 조사원이 작성해야 할 조사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60p 제출서류 참조)

○ 내검요원

-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는 항목누락 및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은 조사원이 재확인·보완토록 한다.
- 전산내검 결과 항목 누락 및 착오, 연관항목 간의 불일치 등 착오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자체 확인·보완한다.

○ 본청

- 지방청·사무소(출장소)의 보완내용이 미비한 경우 농수산통계과 직원이 현지방문 또는 전화로 질의 확인·보완한다.

나. 조사표 확인사항

- ✓ 조사대상에 맞는 조사표를 사용하였는가?
- ✓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 ✓ 조사표상의 금액, 면적 등 단위가 정확하게 조사되었는가?
 - 금액을 원단위 또는 천원단위로 조사하지 않았는가?
- ✓ 조사항목별 합계액이 정확히 기입되었는가?
- ✓ 연관 조사항목 간에는 타당성이 있는가?
- ✓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결산서 사본(1부)은 수집되었는가?
 - 결산서 수집이 가능한 법인일 경우 결산서 사본 1부가 수집되었는가?
 - 결산서 수집이 불가능 법인일 경우 조사표에 경영실태항목을 작성하였는가?

다. 조사항목별 내용검토

- ✓ 사업체명과 비교하여 조직형태가 올바르게 조사되었는지 확인
 - [예] 사업체명에 「영농조합」이란 명칭이 있으면 조직형태는 '1'
- ✓ 사업체가 지사·지점인 경우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가 조사되었는지 확인
- ✓ 상근출자자수와 사업체의 전체 출자자수를 비교
 - [예] 상근출자자수는 사업체의 전체출자자수보다 같거나 적어야 함
- ✓ 법인 설립년월이 2006년 이후로 되어 있으면 오류, 또는 경영개시년월이 법인설립년월 이전이면 재확인
- ✓ 출자금이 0인 경우 또는 출자자수가 0인 경우는 재확인
- ✓ 현물출자액이 출자금(자본금)계의 합계 보다 크면 재확인
- ✓ 출자금(자본금)계의 합계와 결산사항의 자본금이 다른 경우 재확인
- ① 사업체 구분이 『3(지사, 지점, 분점)』인데 회계장부 작성여부가 1(결산서 작성)인 경우 재확인(일반회사법인은 가능) (영농, 영어조합, 농업회사, 영어)
-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가 아닌데 법인설립년월 항목부터 조사된 경우 재확인
- ✓ 농기계창고는 있는데 농기계가 없는 경우 재확인
- ✓ 대형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콤팩트)는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없는 경우 재확인

- ✓ 축사는 있는데 가축(꿀벌제외)사육두수가 없는 경우 혹은 가축(꿀벌제외)사육 두수는 있는데 축사가 없는 경우 재확인
- ✓ 농작물 부호는 조사가 되었는데 재배면적이 없는 경우 재확인
- ✓ 경영경지 중 논 면적은 있는데 논벼 재배면적이 없는 경우, 혹은 논벼 재배면적이 있는데 논 면적이 없는 경우 재확인
- ✓ 경영경지 중 논 면적보다 논벼 재배면적이 더 큰 경우 재확인
- ✓ 경영경지 중 밭 면적이 있는데 재배면적이 없는 경우, 혹은 밭 면적은 없는데 재배면적이 있는 경우 재확인
- ✓ 경영경지 중 목초지는 있는데, 가축사육두수가 없는 경우 재확인
- ✓ 가축종류별로 사육두수는 있는데 판매두수가 없는 경우, 혹은 판매두수는 있는데 사육두수가 없는 경우 재확인
- ✓ 농작물 재배면적은 있는데 작물재배업 수입이 없는 경우, 혹은 작물재배업 수입은 있는데 농작물 재배면적이 없는 경우 재확인
- ✓ 가축 판매 두수는 있는데 축산업 수입이 없는 경우, 혹은 축산업 수입은 있는데 가축 판매 두수가 없는 경우 재확인
- ✓ 농축산물가공업 수입은 있는데 농업시설물 중 가공공장이 없는 경우, 혹은 농업시설물 중 가공공장이 있는데 농축산물 가공업 수입이 없는 경우 재확인
- ✓ 영농대행수입액은 있는데 농기계가 없는 경우 재확인
- ✓ 농업서비스업 수입은 있는데 선별·선과장, 건조장, 창고 모두 없는 경우 재확인
- ✓ 농축산물 판매액, 혹은 수산물판매액 합계와 결산서의 매출액이 다른 경우 재확인
- ✓ 보유어선 중 동력선 = 톤수별 합계 = 선령별 합계 = 출어일수별 합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재확인
- ✓ 해수면양식수입은 있는데 양식장시설이 없는 경우 재확인
- ✓ 양식장시설은 있는데 해수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수입이 모두 없는 경우 재확인
- ✓ 원양어업 또는 근해어업 수입은 있는데 보유어선 중 동력선이 없는 경우 재확인
- ✓ 보유어선은 있는데 어업생산수입이 없는 경우 재확인
- ✓ 어업생산수입은 있는데 양식장시설, 보유어선이 모두 없는 경우 재확인

2. 조사결과표 작성

가. 조사결과 집계표 작성

- 조사원별로 작성·제출한 조사표와 명부를 이용하여 지방청·사무소별 조사결과 집계표 1부를 각각 작성하여 농수산통계과로 제출한다.(청, 사무소에서 출장소분을 취합하여 작성)
- 사업체명부를 이용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관할 지방청·사무소(출장소)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한다(엑셀로 작성할 것).

《조사결과 집계표》

서울 지방청·사무소(출장소)

(단위 : 개,명,백만원)

① 구분 ()	② 조사표작성 사업체수	③ 종사자 수	④ 농축산물 (수산물)판매 (수입)액	⑤ 결산서 작성 법인수	⑥ 비고
2004					
2005					
증감률					
증감사유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만 집계하고 일반회사법인은 제외한다.
- 농업, 어업별로 각각 작성한다.
 - 농업의 경우 「④농축산물판매(수입)액」은 농업생산수입과 농업생산이외 수입을 합계하여 작성
 - 어업의 경우 「④수산물판매(수입)액」은 어업생산수입과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을 합계하여 작성

② 해당 항목의 증감률이 $\pm 10\%$ 이상이면 증감사유를 반드시 상세하게 작성한다.
- 단, 증감률이 $\pm 10\%$ 미만 이라도 규모가 큰 사업체의 증감사유를 반드시 기입한다.

○ 항목별 작성방법

- ① 구분() : 농업·어업을 구분한다.
- ② 조사표작성 사업체수 : 조사표작성 사업체수를 기입한다.
- ③ 종사자수 : 종사자수 합계를 기입한다.
- ④ 농축산물(수산물)판매(수입)액 : 농업(어업)생산수입과 농업(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 ⑤ 결산서작성 법인수 : 경영실태의 『가. 회계장부 작성여부』의 『결산서작성』에 표시된 업체수를 기입한다.
- ⑥ 비고 : 이번 조사에서 결산서를 수집한 법인수 등을 기입한다.

나. 내검결과 오류내역표 작성

전산내검결과 나타나는 최종 OK 에러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입하여 농수산통계과로 스마트플로우(우편)으로 제출한다.

서울지방청·사무소(출장소) ✓

사업체고유번호	에러코드	사유
A11121	N02	농기계는 출자자 개인 집에서 보관하므로 보관창고가 없음
A11119	N30	논 300평 전년 휴경

3. 조사표류 제출

가. 조사원

- 조사원은 조사표류에 대한 검토·보완을 완료한 다음 지방청·사무소(출장소)의 농수산팀장에게 제출한다.

〈 조사원이 제출해야할 자료 〉

- ✓ 조사표
- ✓ 법인사업체명부(수정·보완한 것)
- ✓ 결산서(결산서 사본 1부를 제공한 법인분)

~~조사원명, 부하 직원명(직장)~~
 조사원 관리명부.

나. 지방청·사무소

- 지방청·사무소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조사관련 제출 자료를 취합하여 전송한다.(청·사무소에서 출장소분 취합)

〈 지방청, 사무소 취합 제출할 자료 〉

- ✓ 조사결과 제출 공문
- ✓ 조사결과 집계표

- 지방청·사무소(출장소)는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류를 각각 집계·편철하여 보관한다.

4. 조사표 편철 요령

- 조사표는 농업조사표, 어업조사표 등 2종으로 각각 나누어 편철하되, 각 권당 100부 단위로 묶어서 편철한다.
- 조사표는 조사표 일련번호 순으로 1권부터 묶어 편철한다.
 [예] 농업조사표(120매), 어업조사표(40매) 합계 160매를 작성한 사무소의 조사표 편철은
 - 첫번째 : 조사표 종류별로 조사표 일련번호 부여
 - 두번째 : 제 2권중 1권 농업조사표(1번~100번), 제 2권중 2권 농업조사표(101번~120번), 제 1권중 1권 어업조사표(1번~40번)으로 묶음

《조사표 표지 작성요령》

지방청, 사무소(출장소)명	경남사무소		
조사표매수	100 매	조사표 권수	2 권중 1 권

- ✓ 조사표 권수는 지방청·사무소(출장소)의 조사표 종류별로, 총 권수 중 몇 권째인지를 기입한다.
- ✓ 해당 권에 묶인 조사표 종류별, 조사표매수를 기입한다.

5. 결산서 편철 및 표지 작성 요령

- 결산서는 지방청·사무소(출장소)별로 편철하되, 부수가 많아 한권에 모두 편철이 어려운 경우는 적정 분량으로 나누어 편철·보관한다.
- 아래와 같이 색인표를 작성하여, 결산서 편철 표지위에 부착한다.

보령 지방청·사무소(출장소)

일련번호	결산서 수집 사업체명	사업체 고유번호	결산서 수집내용			비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50	훈익영농조합법인	I20201	○	○	○	
51	미래농산영농조합법인	I20202	○	○		

IX. 조사요원 안전수칙

안전수칙

1. 조사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 파출소, 조사관리자, 지도공무원 등의 비상연락처를 메모해 둔다.
- ✓ 조사당일의 일정을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 ✓ 간편하면서도 단정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한다.

2. 조사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사항

- ✓ 가능하면 낮에 방문하고 야간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너무 늦은 시간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 야간 방문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도록 하고,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어둡거나 물건을 쌓아 놓은 곳 등 위험한 곳은 가급적 피해 안전한 장소로 다녀야 한다.
 - 사업체를 방문하여 언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면접조사시 응답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 ✓ 필요 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정중한 태도로 면접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 부재중인 사업체에 들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 ✓ 불안을 느낄 때는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온다.
 - 위험이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쳐 주위의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4. 사고유형별 사례 및 주의사항

- ✓ 넘어지고 떨어져 다침
 - 어두움으로 인해 계단을 다 내려온 줄로 착각하여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침
 -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열리는 문에 밀려 2층 계단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침
 -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던 중 뚜껑이 하수구로 빠져 허벅지를 다침
- ✓ 교통사고
 - 조사 관리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조사지역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 전복으로 인해 손가락과 다리를 다침

✓ 기타

- 자전거를 타고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 중 넘어져 다침
-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나 야간 및 비가 올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산재보험 안내

1. 산재보험의 의의

-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도입된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산적 복지추진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01. 1. 1부터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어 이번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요원 여러분들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시 산재보험의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2.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한다.

3. 산재보험 급여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다.
- 급여의 청구는 의료기관, 산재근로자, 시·군·구의 장, 수급권자가 관련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제출한다.

X. 조사 사례

□ 조사방법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 결산서상 매출액과 실제 응답한 매출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는	○ 결산서 매출액을 조사	○ 결산서를 우선 조사

□ 조사대상여부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 『충북농업기술원』도 조사 대상 사업체인지	○ 농축산물 생산이나 영농대행업을 경영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임 ○ 조사표 4번항목까지 조사	○ 공법인의 경우 『조사대상산업(지침서 1쪽)』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 『구미환경관리사업소』는 판매나 자가 소비 목적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처치할 목적으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사업체인지	○ 조사대상이 아님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이외의 사업체는 농업경영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
○ 주유소 운영을 하는 『우리 영농조합법인』은 조사대상인지	○ 조사대상임 ○ 다만, 조사표 내용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 사항 등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전 처리하고, 조사표 표지 혹은 「적요」란에 ‘주유소 운영’ 이라고 기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은 운영사업과 무관하게 조사대상임
○ 『구미송어양식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들이 개별운영(각각 개인 양식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인지	○ 조사대상이며, 출자자개별운영일 경우 명부에 출자자개별운영 표시를 하고 조사표는 작성하지 않음	
○ 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업실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하는 경우	○ 조사대상임	○ 연구를 목적으로 농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임

□ 농업시설물 보유현황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 선과장과 농기계 창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농업시설물 조사는	○ 선과장과 창고의 사용 비율을 고려하여, 사용 비율이 높은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1개의 건물로 조사 예) 선과장 사용비율이 30%, 농기계 창고의 사용비율이 70%라면 농기계 창고로 조사	○ 겸용 시설물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판단
○ 유리온실, 비닐하우스는 농업 시설물인가	○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물은 농업시설물 조사에서 제외 ○ 다만, 시설에서 생산되는 재배작물은 「3-나. 시설재배작물명」에서 작물별로 조사	○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물은 제외
○ 영농조합법인이 양어장을 운영할 경우 농업시설물은	○ 조사에서 제외	○ 농업용도 이외의 시설물은 제외
○ 『저온 저장창고』는 농업 시설물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 기타에 해당	○ 주된 용도 기준으로 판단
○ 사일로(사료저장고)는	○ 사료창고로 조사	
○ 양계장은	○ ⑤축사로 조사	
○ 도축장은	○ ④농축산물가공공장으로 조사	

□ 농기계 보유현황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 농축산물 가공공장 내 보일러는	○ 공장내의 설비시설들은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농기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농기계만 조사
○ 고장난 농기계는	○ 수리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조사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폐기할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에서 제외	○ 수리하여 사용할 의사 유무에 따라 판단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담배 건조용 건조기는	○동력을 이용한 농산물 건조기이면 모두 포함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농기계는 조사
○유리온실 등 시설재배를 하기 위한 보일러는	○「1-나 농기계」에서 『㉔기타』로 처리	
○양과망을 만드는 편직기, 재단기, 봉제미싱기는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이므로 농기계에서 제외	○농업 용도 이외의 기계는 조사 제외
○단순히 가공만하는 영농조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는	○지게차는 농기계에서 제외	

□ 경영 경지면적 및 농작물재배면적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버섯재배를 하는 『강원송이 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 재배사를 3층으로 운영한다. 1개층의 면적이 10평일 경우 재배면적은	○ 30평으로 조사	○농작물재배면적은 연면적으로 조사
○논벼를 수확한 후 겨울동안 마늘, 파를 재배한 경우 경지면적 조사는	○『2.경영경지면적』에 논으로 조사 ○『3.농작물재배면적』은 논벼, 마늘, 파 재배면적을 모두 합산해서 조사	○경지는 실제 이용되는 지목에 따라 분류 ○농작물재배면적은 연면적으로 조사
○부추 1,000평을 심고, 연중 3회 싹을 잘라 판매하였을 경우 재배면적은	○과종면적 1,000평으로 조사	○재배면적은 수확면적이 아니라 작물과종면적을 말함
○벼묘상 100평을 재배한 후는 1,000평에 옮겨 심었을 경우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벼묘상 면적도 조사하는지	○동일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위해 벼묘를 재배하였으므로, 최종 생산물인 논벼 면적 1,000평만 조사	○종자, 종묘는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조사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중 논 10,000평을 임차하여 논벼를 생산한 후 11월에 반납하였다. 경영경지면적과 농작물재배면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경영경지면적』은 조사기준시점(12월말) 법인이 경영을 하고 있어야 되므로 조사에서 제외 ○ 『3. 농작물재배면적』은 조사대상기간중의 재배면적이므로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에 목초지를 조성한 경우 목초지 면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밭이었을지라도 현재 지목 형태가 목초지로 운영되는 경우 목초지 면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지 형태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개배수 시설을 갖추었으나 하우스 작물 등 실질적인 밭작물을 심었을 때 경영경지면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밭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버섯을 산에 자연상태의 나무에 넣었을 경우 경영경지면적은(장뇌삼의 경우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이므로, 경영경지면적에서는 제외 ○ 농작물재배면적은 기입하고, 적요란에 사유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를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경영경지 면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경영경지면적』에서 임차면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임차도 임차면적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영농대행업체가 남의논을 갈아준 면적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재배면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경작면적만 조사

□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 / 농축산물 판매액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우를 사육하여 100두를 판매하고 조사기준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이 없을 경우 가축사육 두수는	○ 가축사육두수는 '0' ○ 판매두수는 100마리로 조사	○ 가축사육 두수는 조사기준일을 기준 ○ 판매두수는 조사 대상기간을 기준
○ 닭 50마리와 병아리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면 사육수는	○ 닭 150수로 조사	○ 병아리도 닭으로 조사
○ 꿀벌의 50통을 칠 경우	○ 50통으로 조사	○ 꿀벌은 통(벌통) 단위로 조사
○ 달팽이, 지렁이 사육도 조사하는가	○ 「4.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에서 ⑥ 기타로 조사 ○ 「7.농축산물 판매액」의 「축산업」 수입으로 조사	○ 환형동물도 가축에 포함
○ 닭 50마리 미만이나 닭 50~99마리를 사육할 때 닭 사육 및 판매 마리의 단위 처리는	○ 닭 50마리 미만인 경우는 0, 50-99마리는 1백마리로 조사	○ 닭은 100마리를 단위로 반올림하여 조사
○ 학교나 시험장에서 가축을 시험적으로 사육하여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판매두수로 조사하여야 하는지	○ 판매 두수로 조사하지 않음	○ 증여는 농축산물 판매에서 제외
○ 영농조합법인이 관상어를 양식 판매하는 경우 판매액의 조사는	○ 『7-나.농업생산이외수입』 중 『⑧기타사업수입』으로 조사	○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
○ 영농조합법인이 명태나 오징어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액의 조사는	○ 『7-나.농업생산이외수입』 중 『⑧기타사업수입』으로 조사	
○ 잔디 작물 부호와 판매 수입액은	○ 『13(기타작물)』으로 처리하고, 판매액은 『7-가.농업생산수입』 중 『①작물재배업』으로 조사	○ 농작물 부호표 참조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가축을 맡아서 길러주는 경우는	○가축 사육 두수에만 포함하고, 판매 두수에서는 제외 ○이 때 받은 수수료는 7-나.농업생산이외수입중 ⑥영농대행수입액으로 조사	○가축을 맡아 길러주는 경우 사육 두수는 포함, 판매 두수는 제외
○저온창고가 있을 경우 농축산물 판매액은 기타수입인지 농업서비스업 수입인지	○단순히 저온창고만 운영할 경우는 창고업으로 봐서 『7-나.농업생산이외수입』 중 『⑧기타사업수입』으로 조사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
○메벼를 수매해서 가공판매하는 경우 판매액은	○『7-나.농업생산이외수입』 중 『④농축산물가공업』으로 조사	
○인진쑥, 장뇌삼 작물 부호는	○『3-가 노지재배작물명』에서 08(특용작물)으로 조사	○농작물 부호표 참조
○꿀벌 사육하는 업체가 꿀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액은	○가내에서 수동으로 하는 경우는 『7-가.농업생산수입』에서 『②축산업수입』으로 하고, 전문적인 기계장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④농축산물가공업』으로 처리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
○젖소의 우유 판매 수입은	○『7-가.농업생산수입』에서 『②축산업수입』으로 하고, 우유를 수매해서 전문적으로 가공판매하는 경우는 『④농축산물가공업』으로 처리	
○누에를 치는 경우 가축 및 가금 사육 두수 및 농축산물 판매액 구분은	○『4.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에서 『⑥기타』, 『7.농축산물판매액』에서 『②축산업수입』으로 처리하고 단위는 장으로 조사	○누에도 가축에 포함 - 농가에서 사용하는 단위 산정
○뽕나무의 작물부호는	○『기타(13)』으로 조사	○농작물 부호표 참조
○파프리카 작물 부호는	○『채소류(06)』으로 조사	
○폐계닭의 판매두수 및 판매액은	○판매두수 및 농축산물 판매액에 포함하여 조사	○폐계닭도 조사대상
○각종 동물의 정액생산은	○각각의 동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축산업이므로 『②축산업수입』으로 조사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p>○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들이 각자 채소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으로 출하하지만, 판매금액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영농조합법인은 회원들이 1년에 한번 내는 일정액의 회비와 판매수수료로 운영된다. 판매액 조사는</p>	<p>○ 연회비수입과 판매수수료 수입만 영농조합법인의 판매액(수입액)은 「5-나.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중 ⑧ 기타사업수입으로 조사</p>	<p>○ 연회비수입과 판매수수료도 판매액으로 조사</p>

□ 양식장 시설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p>○ 10월까지 경영했던 양식장을 매각한 경우 양식장 시설은</p>	<p>○ 조사기준일 현재 보유한 양식장이 없으므로 <u>1.양식장 시설</u>은 조사에서 제외</p>	<p>○ 조사기준일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를</p>
<p>○ 낚치 종묘양식을 하는 경우 양식장 시설조사는</p>	<p>○ 어류로 조사</p>	<p>○ 종묘양식도 해당 어종에 포함하여 조사</p>
<p>○ 사업체 대표자가 양식장 700평은 법인회사 명의로 500평은 개인 명의로 소유하며 경영하고 있을 경우 양식장 면적은</p>	<p>○ 양식장 700평만 조사</p>	<p>○ 개인이 경영하는 양식장은 제외</p>

□ 수산물 판매액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양어업』은 굴 양식을 하면서 통조림 가공판매를 하는데, 수산물 판매액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굴 판매분은 『5-가.어업생산 수입』에서 『④해수면 양식어업』에 해당 통조림 가공 판매분은 『5-나.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중 『⑦수산물가공업』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에서 직접 양식한 물김을 김으로 최종 가공 판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수산물가공업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

□ 보유어선 현황

사 례	조사방법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사업이 어로어업인 영어 조합법인이 주 어선(동력선) 1척과 선어운반선(동력선) 1척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유 어선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어운반선도 어업을 위한 배이므로 어선으로 조사하여 동력선 2척으로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에 이용되는 경우 조사 대상, 타용도 사용이면 조사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배(0.1톤)도 어선에 포함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여객용으로 사용하는 동력선을 조사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준시점 현재 어선을 수리중이라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수리중인 어선을 조사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하여 어업에 사용할 경우 조사 대상



부 록

1. 농기계부호표(동력)
2. 농작물부호표
3. 가축부호표
4. 어 종(내수면)분류표
5. 재무제표
6. 전년대비 사업체명부 증감 코드표
7. 조사표작성 예시

1. 농기계부호표(동력)

부호	기종	부호	기종	부호	기종
1	트랙터	10	선별기	10	콩정선기
2	이앙기		콩선별기		크레인
3	콤바인		농산물세척기		탈곡기
4	경운기		축사용고압세척기		탈망기
5	예취기		땅속작물수확기		톱밥제조기
6	관리기		마늘수확기		트레일러
7	동력(살)분무기		목초수확기		특수오편수처리차량
8	온풍기		사료작물수확기		농용잔가지파쇄기
9	농산물건조기		옥수수수확기		목재파쇄기
10	기타		스커트로더		심토파쇄기
	구굴기	스크레이퍼	중균파쇄기		
	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파워핸드카		
	굴취기	써래	감자파종기		
	그래플	양수기	옥수수파종기		
	논두렁조성기	연무기	옥묘용파종기		
	과수인공교배기	곡물이송기	파종기		
	농산물결속기	온실용난방용대체에너지화기기	풍구		
	농용로우더	온실용동력개폐기	플라우		
	디스크모아	곡물이송탱크	피복기		
	레이크	우유냉각기	하우스환경제어장치		
	레핑기	운반차	해로우		
	로타리	음이온발생기	혈굴기		
	로타베이터	이식기	환풍기		
	무논정지기	이앙장치	휴립기		
	발근기	자동관수분배기	바인더		
	방제기	쟁기	기타동력농기계		
	배토기	전정기			
	버섯자동천공집종기	고추꼭지자동절단기			
	베일러	마늘줄기절단기			
	벼직파기	절단기			
	벼품위자동판정기	정미기			
	농용유류보일러	제초기			
	석(연)탄보일러	중자봉입기			
	복토기	집초기			
	곡물수집차	채소자동접목기			
	사료기(배합기)	철차륜			
	비료살포기	쪼퍼			
	퇴비살포기	측조시비기			
	상토제조기	큰베이어			

2. 농작물부호표

부호	작물명	부호	작물명	부호	작물명	부호	작물명
	벼	06	양배추	06	쪽파	08	땅콩
01	벼	06	시금치	06	대파	08	기타특용
	맥류	06	상추	06	기타조미채소		약용작물
02	보리	06	기타엽채류		양채류	08	약용작물
02	맥주보리		과채류	06	양채류		전매작물
02	밀	06	수박		과수	08	인삼
02	호밀	06	참외	07	사과	08	담배
02	기타맥류	06	오이	07	배	08	기타전매작물
	두류	06	호박	07	복숭아		화훼작물
03	콩	06	토마토	07	포도	09	화훼작물
03	팥	06	딸기	07	뽕은감		사료작물
03	기타두류	06	기타과채류	07	단감	10	호밀
	잡곡		근채류	07	자두	10	옥수수
04	옥수수	06	무	07	파인애플	10	기타사료
04	기타잡곡	06	당근	07	바나나		종자, 종묘
	서류	06	기타근채류	07	감귤	11	벼묘상
05	고구마		조미채소	07	기타과수	11	채소묘상
05	감자	06	고추		특용작물	11	기타묘상
05	기타서류	06	풋고추	08	유채		버섯 및 기타작물
	엽채류	06	마늘	08	참깨	12	버섯
06	배추	06	양파	08	들깨	13	기타 작물

(가나다순)

부호	작물명	부호	작물명	부호	작물명	부호	작물명
07	감귤	07	단감	02	보리	06	참외
05	감자	08	담배	07	복숭아	11	채소묘상
05	고구마	06	당근	07	사과	03	콩
06	고추	06	대파	06	상추	06	토마토
07	기타과수	08	들깨	06	수박	07	파인애플
06	기타과채류	06	딸기	06	시금치	03	팥
06	기타근채류	08	땅콩	08	약용작물	07	포도
03	기타두류	07	뽕은감	06	양배추	06	풋고추
02	기타맥류	06	마늘	06	양채류	02	호밀(맥류)
11	기타묘상	02	맥주보리	06	양파	10	호밀(사료)
10	기타사료	06	무	06	오이	06	호박
05	기타서류	02	밀	04	옥수수(잡곡)	09	화훼작물
06	기타엽채류	07	바나나	10	옥수수(사료)		
13	기타작물	07	배	08	유채		
04	기타잡곡	06	배추	08	인삼		
08	기타전매작물	12	버섯	07	자두		
06	기타조미채소	01	벼	06	쪽파		
08	기타특용	11	벼묘상	08	참깨		

3. 가축부호표

(가나다순)

부호	가축명	부호	가축명
1	한육우, 젓소수컷	6	밍크
2	젓소		토끼
3	돼지		오리
4	닭		칠면조
5	꿀벌		메추리
6	사슴		꿩
	면양	기타가축	
	젓산양		
	염소		
	여우		

부호	가축명	부호	가축명
6	기타가축	6	염소
5	꿀벌	6	오리
6	꿩	6	젓산양
4	닭	2	젓소
3	돼지	6	칠면조
6	메추리	6	토끼
6	면양	1	한우
6	밍크		
6	사슴		
6	여우		

※ 멧돼지는 돼지에 해당함

4. 어종(내수면)분류표

분류	어종명
어류	넙치, 농어, 능성어, 감성돔, 참돔, 민어, 방어, 보구치, 복어, 조피볼락, 기타볼락, 송어, 임연수어, 쥐치, 뱀장어, 메기, 가물치, 황복어, 황어 등
갑각류	대하, 새우, 참게, 토하 등
패류	소라고둥, 전복, 가리비, 가무락, 개량조개, 꼬막, 반지락, 백합, 키조개, 피조개, 홍합, 우렁, 재첩, 논고동 등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청각, 툫, 파래, 꼬시래기 등
기타수산동물	미더덕, 성게, 해삼, 우렁쟁이, 자라, 거북이 등

(가나다 순)

어종	분류	어종호	분류	어종	분류	어종	분류
가리비	패류	미역	해조류	우렁쟁이	기타수산동물	파래	해조류
가무락	패류	민어	어류	임연수어	어류	피조개	패류
가물치	어류	반지락	패류	자라	기타수산동물	해삼	기타수산동물
감성돔	어류	방어	어류	재첩	패류	홍합	패류
개량조개	패류	백합	패류	전복	패류	황복어	어류
거북이	기타수산동물	뱀장어	어류	조피볼락	어류	황어	어류
꼬막	패류	보구치	어류	쥐치	어류	김	해조류
꼬시래기	해조류	복어	어류	참게	갑각류	넙치	어류
논고동	패류	기타볼락	어류	참돔	어류	대하	갑각류
농어	어류	새우	갑각류	청각	해조류	미더덕	기타수산동물
능성어	어류	성게	기타수산동물	키조개	패류	소라고둥	패류
다시마	해조류	송어	어류	토하	갑각류		
메기	어류	우렁	패류	툫	해조류		

5. 재무제표

(별지 제1호 서식)

대차대조표 (보고식)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회 사 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조사항목	×××		
(1) 당 좌 자 산				
1. 현금 및 현금 등 가 물				
2. 단기 금융 상품				
3. 유가 증권				
4. 매출채권				
5. 대손충당금				
6. _____				
(2) 재 고 자 산				
1. 상품				
2. 제품				
3. 반제품				
4. 재공품				
5. 원재료				
6. 저장품				
7. _____				
II. 고정 자산	조사항목	×××		
(1) 투 자 자 산				
1. 장기 금융 상품				
2. 투자유가 증권				
3. 장기대여금				
4. 대손충당금				
5. 장기성매출채권 차 금				
6. 현재가치할인 차 금				
7. 대손충당금				
8. 투자부동산				
9. 보증금				
10. 이연법인세 차				
11. _____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2) 유형 자산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장치				
5. 선박				
6. 차량운반구				
7. 건설중인 자산				
8. _____				
(3) 무형 자산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3. 광업권				
4. 어업권				
5. 차지권				
6. 창업비				
7. 개발비				
8. _____				
자 산 총 계	조사항목	xxx		
부 채				
I. 유 동 부 채	조사항목	xxx		
1. 매입채무				
2. 단기차입금				
3. 미지급법인세				
4. 미지급배당금				
5. 유동성장기부채				
6. xx충당금				
7. _____				
II. 고 정 부 채	조사항목	xxx		
1. 사채				
사채발행차금				
2. 장기차입금				
3. 장기성매입채무				
현재가치할인차금				
4. xx충당금				
5. 이연법인세대				
6. _____				
부 채 총 계	조사항목	xxx		

과 목	제×(당)기		×(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I. 자본금	조사항목	xxx		
1. 보통주 자본금				
2. 우선주 자본금				
II. 자본잉여금	조사항목	xxx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기타자본잉여금				
III. 이익잉여금 (또는결손금)	조사항목	xxx		
1. 이익준비금				
2. 기업합리화적립금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4. ××적립금				
5.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IV. 자본조정	조사항목	xxx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배당건설이자				
3. 자기주식				
4. 미교부주식배당금				
5.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6.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				
7. _____				
자본총계	조사항목	xxx		
부채와자본총계	조사항목	xxx		

(별지 제5호 서식)

손익계산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조사항목	×××		
II. 매출원가	조사항목	×××		
1. 기초상품(또는제품) 재고액				
2. 당기매입액 (또는제품제조원가)				
3. 기말상품(또는제품) 재고액				
III. 매출총이익 (또는매출총손실)	조사항목	×××		
IV. 판매비와관리비	조사항목	×××		
1. 급여				
2. 퇴직급여				
3. 복리후생비				
4. 임차료				
5. 접대비				
6. 감가상각비				
7. 무형자산상각비				
8. 세금과공과				
9. 광고선전비				
10. 연구비				
11. 경상개발비				
12. 대손상각비				
13. 통신비 및 수도광열비				
14. 수선 및 수리비				
15. _____				
V. 영업이익 (또는영업손실)	조사항목	×××		
VI. 영업외수익	조사항목	×××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임대료				
4. 유가증권처분이익				
5. 유가증권평가이익				
6. 외환차익				
7. 외환환산이익				
8. 지분법평가이익				
9. 투자유가증권감손실환입				
10. 투자자산처분이익				
11. 유채상환이익				
12. 사채상환이익				
13. 법인세환급액				
14. _____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VII. 영업외비용 1. 이 자 비 용 2. 기 타 의 대 손 상 각 비 3.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4.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5. 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6. 외 환 차 손 7. 외 환 환 산 손 실 8. 기 부 금 9. 지 분 법 평 가 손 실 10. 투 자 유 가 증 권 감 액 손 실 11. 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12.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13. 사 채 상 환 손 실 14. 법 인 세 추 납 액 15. _____	조사항목	xxx				
		VIII. 경 상 이 익 (또는 경 상 손 실)	조사항목	xxx		
			조사항목	xxx		
		IX. 특 별 이 익 1. 자 산 수 증 이 익 2. 채 무 면 제 이 익 3. 보 험 차 익 4. _____	조사항목	xxx		
			조사항목	xxx		
		X. 특 별 손 실 1. 재 해 손 실 2. _____	조사항목	xxx		
		XI.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손 실)		xxx		
		XII. 법 인 세 비 용		xxx		
		XIII. 당 기 순 이 익 (또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 : xxx원) (주 당 순 이 익 : xxx원)	조사항목	xxx		

6. 전년대비 사업체명부 증감 코드표

조사표 유 무	2004		2005				사업체 변동현황					
	운영 여부	부호	운영 여부	부호	변동상태	부호	변동 없음	증가	감소	에러		
2004= 2005	사업중	1	사업중	1	-	-	Q01	-	-	-		
					폐업	01	-	-	-	E01		
					휴업	02	-	-	-	E02		
					대상외	03	-	-	-	E03		
					소제불명	04	-	-	-	E04		
					중복	05	-	-	-	E05		
					신규	06	-	-	-	E06		
					누락	07	-	-	-	E07		
					전입	08	-	P01	-	-		
					전출	09	-	-	M01	-		
			기타	10	-	-	-	E08				
			사업 준비중	2					E09			
			사업 안함	3	-	-	-	-	-	E10		
					폐업	01	-	-	M02	-		
					휴업	02	-	-	M03	-		
					대상외	03	-	-	M04	-		
					소제불명	04	-	-	M05	-		
					중복	05	-	-	-	E11		
	신규	06			-	-	-	E12				
	누락	07			-	-	-	E13				
	전입	08	-	-	-	E14						
	전출	09	-	-	-	E15						
	기타	10	-	-	-	E16						
	사업 준비중	2	사업중	1	-	-	Q02	-	-	-		
					폐업	01	-	-	-	E17		
					휴업	02	-	-	-	E18		
					대상외	03	-	-	-	E19		
					소제불명	04	-	-	-	E20		
					중복	05	-	-	-	E21		
					신규	06	-	-	-	E22		
					누락	07	-	-	-	E23		
					전입	08	-	P02	-	-		
					전출	09	-	-	M06	-		
			기타	10	Q03	-	-	-				
			사업 준비중	2	사업 준비중	2	-	-	Q04	-	-	-
							폐업	01	-	-	-	E24
							휴업	02	-	-	-	E25
							대상외	03	-	-	-	E26
							소제불명	04	-	-	-	E27
중복							05	-	-	-	E28	
신규							06	-	-	-	E29	
누락	07	-					-	-	E30			
전입	08	-					P03	-	-			
전출	09	-					-	M07	-			
기타	10	-	-	-	E31							
사업 안함	3	-	-	-	-	-	E35					
		폐업	01	-	-	M08	-					
		휴업	02	-	-	M09	-					
		대상외	03	-	-	M10	-					
		소제불명	04	-	-	M11	-					
		중복	05	-	-	-	E36					
		신규	06	-	-	-	E37					
		누락	07	-	-	-	E38					
		전입	08	-	P04	-	-					
전출	09	-	-	M12	-							
기타	10	-	-	-	E39							

사업체 고유번호	2004		2005				사업체 변동현황			
	운영 여부	부호	운영 여부	부호	변동상태	부호	변동 없음	증가	감소	에러
2004= 2005	사업 안함	3	사업중	1	-	-	-	-	-	E40
					폐업	01	-	-	-	E41
					휴업	02	-	-	-	E42
					대상외	03	-	-	-	E43
					소재불명	04	-	-	-	E44
					중복	05	-	-	-	E45
					신규	06	-	P05	-	-
					누락	07	-	P06	-	-
					전입	08	-	P07	-	-
					전출	09	-	-	M13	-
			기타	10	-	P08	-	-		
			사업 준비중	2	-	-	-	-	-	E46
					폐업	01	-	-	-	E47
					휴업	02	-	-	-	E48
					대상외	03	-	-	-	E49
					소재불명	04	-	-	-	E50
					중복	05	-	-	-	E51
					신규	06	-	P09	-	-
					누락	07	-	P10	-	-
					전입	08	-	P11	-	-
					전출	09	-	-	M14	-
			기타	10	-	P12	-	-		
			사업 안함	3	-	-	-	-	-	E52
					폐업	01	Q05	-	-	-
					휴업	02	Q06	-	-	-
					대상외	03	Q07	-	-	-
					소재불명	04	Q08	-	-	-
					중복	05	-	-	-	E53
					신규	06	-	-	-	E54
					누락	07	-	-	-	E55
전입	08	Q09			-	-	-			
전출	09	Q10			-	-	-			
기타	10	-	-	-	E56					

사업체 고유번호	2004		2005				사업체 변동현황				
	운영 여부	부호	운영 여부	부호	변동상태	부호	변동 없음	증가	감소	에러	
2004 > 2005	사업중	1	-	-	-	-	-	-	M15	-	
	사업 준비중	2	-	-			-	-	M16	-	
	사업 안함	3	-	-			Q11	-	-	-	
2004 < 2005	-	-	사업중	1	-	-	-	-	-	-	E57
					폐업	01	-	-	-	-	E58
					휴업	02	-	-	-	-	E59
					대상외	03	-	-	-	-	E60
					소재불명	04	-	-	-	-	E61
					중복	05	-	-	-	-	E62
					신규	06	-	P13	-	-	-
					누락	07	-	P14	-	-	-
					전입	08	-	-	-	-	E63
					전출	09	-	-	-	-	E64
	기타	10	-	P15	-	-	-				
	-	-	사업 준비중	2	-	-	-	-	-	-	E65
					폐업	01	-	-	-	-	E66
					휴업	02	-	-	-	-	E67
					대상외	03	-	-	-	-	E68
					소재불명	04	-	-	-	-	E69
					중복	05	-	-	-	-	E70
					신규	06	-	P16	-	-	-
					누락	07	-	P17	-	-	-
					전입	08	-	-	-	-	E71
					전출	09	-	-	-	-	E72
	기타	10	-	P18	-	-	-				
	-	-	사업 안함	3	-	-	-	-	-	-	E73
					폐업	01	Q12	-	-	-	-
					휴업	02	Q13	-	-	-	-
					대상외	03	Q14	-	-	-	-
					소재불명	04	Q15	-	-	-	-
					중복	05	Q16	-	-	-	-
					신규	06	-	-	-	-	E74
					누락	07	-	-	-	-	E75
전입					08	-	-	-	-	E76	
전출					09	-	-	-	-	E77	
기타	10	-	-	-	-	E78					

7. 전년대비 조사표 전년대비 수준별 검토표

구분	조사표 항목	CODE	에러내용
농업 법인	0. 표지	AF01	조직형태와 사업체 구분이 전년과 불일치
		AF02	상근출자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AF03	상근고용종사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AF04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1.농업시설물	BF01	농업시설물이 전년과 불일치
		BF02	트랙터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F03	이앙기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F04	콤바인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F05	경운기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F06	예취기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F07	분무기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F08	온풍기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F09	건조기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2.경지면적	CF01	법인소유면적 논 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F02	법인소유면적 밭 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F03	법인소유면적 과수원 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F04	법인소유면적 목초지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F05	임차면적 논 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F06	임차면적 밭 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F07	임차면적 과수원 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F08	임차면적 목초지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3.재배면적	DF01	노지재배면적 합계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DF02	시설재배면적 합계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4.가축	EF01	가축사육두수가 전년 0이 아니나 금년은 0임
		EF02	가축사육두수가 금년 0이 아니나 전년은 0임
	5.개시년도	FF01	법인설립년도와 농업경영개시년도가 전년과 불일치
	6.출자	GF01	농업인 출자자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2	비농업인 출자자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3	생산자단체 출자자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4	농업인 출자금계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5	비농업인 출자금계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6	생산자단체 출자금계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7	현물출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8		정부보조금 누계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GF09		정부융자금 잔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구분	조사표 항목	CODE	에러내용
농업 법인	7.판매액	HF01	농업생산수입 작물재배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HF02	농업생산수입 축산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HF03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농축산물가공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HF04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농축산물유통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HF05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영농대행수입액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HF06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농업서비스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HF07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8.경영실태	IF01	회계작성여부와 사무실 사용여부가 전년과 불일치
		IF03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03	고정자산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04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05	고정부채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06	자본금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07	잉여금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08	매출액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09	매출원가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10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11	영업외수익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12	영업외비용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13	특별이익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14	특별손실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IF15	법인세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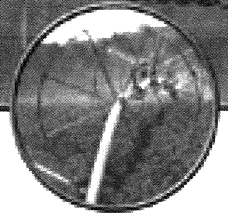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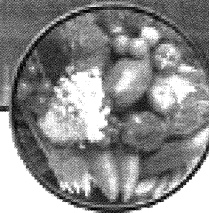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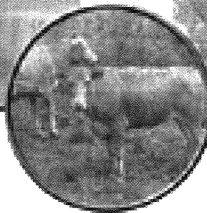
구분	조사표 항목	CODE	에리내용
어업 법인	0.표지	AS01	조직형태와 사업체 구분이 전년과 불일치
		AS02	상근출자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AS03	상근고용종사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AS04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1.양식장	BS01	어류 시설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S02	패류 시설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S03	해조류 시설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S04	갑각류 시설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BS05	기타수산동식물 시설면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2.보유어선	CS01	동력선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2	무동력선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3	선외기선이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4	10톤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5	10~20톤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6	20~50톤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7	50~100톤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8	100톤 이상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09	5년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10	5~10년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11	10~15년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12	15~20년 미만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13	20년 이상 척수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CS14	출어일수 합계가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
	3.어업경영	DS01	법인설립년월과 어업경영개시년월이 전년과 불일치
	4.출자	ES01	어업인 출자자수가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2	비어업인 출자자수가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3	생산자단체 출자자수가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4	어업인 출자금계가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5	비어업인 출자금계가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6		생산자단체 출자금계가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7		현물출자금이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8		정부보조금 누계가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ES09		정부유자금 잔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	

구분	조사표 항목	CODE	예리내용
어업 법인	5.판매액	FS01	어업생산수입 원양어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2	어업생산수입 근해어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3	어업생산수입 연안어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4	어업생산수입 해수면양식어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5	어업생산수입 내수면어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6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수산물가공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7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어업서비스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8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수산물유통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FS09	어업생산이외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6.경영실태	GS01	회계작성여부와 사무실 사용여부가 전년과 불일치
		GS02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03	고정자산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04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05	고정부채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06	자본금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07	잉여금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08	매출액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09	매출원가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10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11	영업외수익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12	영업외비용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13	특별이익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14	특별손실이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GS15	법인세가 전년대비 30%이상 변동	

☞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오류 코드표는 프로그램 안에 수록되어 있음



2005년 기준 농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표



사업체 명부의 고유번호 이기

■ 이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13조, 제14조)

2006. 1월 기준 행정구역분류번호(사업체명부 참고)

※ 사업체고유번호

※ 행정구역번호

※ 조사표일련번호

→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일괄부여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전화번호	사무실(사업장) : () -		사업체명과 비교하여 하나에만 O표	
④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⑤ 조직형태	10. 영농조합 20. 농업회사 (21. 합명회사 22. 합자회사 23. 유한회사 24. 주식회사) 30. 일반회사 40. 국가·지방자치단체 50. 생산자단체 60. 학교 70. 기타			
⑥ 사업체 구분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3. 지사·지점·분점			
	▶ 사업체 구분이 「3. 지사·지점·분점」 인 경우만 작성			
	본사명	전화번호 () -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⑦ 종사자수 (2005. 12. 31. 현재)	합 계	상근출자자 (비상근자 제외)	상근고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 임시 및 일일종사자란 2005. 12. 31. 현재 종사자로서 일당 등 부정기적으로 노임을 받고, 지난 1년간 90일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응답자명		조사 담당자	(인)	내용 검토자	(인)
전화번호	() -				

조직형태가 「10, 21 ~ 24」 이면서 사업체구분이 「1, 2」 이면 반드시 1명 이상

「2. 경영경지면적, 3. 농작물재배면적, 4.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 7. 농축산물 판매액과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

1.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

→ 2005년말 현재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현황을 기입합니다.

가. 농업시설물	개 소		개 소	나. 농기계	대 수		대 수
	십	개			십	개	
① 선과·선별장			⑥ 중 균 배 양 장	① 농업용 트랙터			⑥ 관 리 기
② 농 기계 창 고			⑦ 사 료 창 고	② 동 력 이 양 기			⑦ 동 력 (살) 분 무 기
③ 농 산 물 건 조 장			⑧ 기타 ()	③ 콤 바 인			⑧ 온 풍 기
④ 농 축 산 물 가 공 공 장				④ 경 운 기			⑨ 농 산 물 건 조 기
⑤ 축 사				⑤ 예 취 기			⑩ 기타 ()

▶ 고장난 농기계도 수리하여 사용가능하면 조사에 포함합니다.

2. 경영 경지면적

→ 2005년말 현재 법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지면적을 기입합니다.

구	분	2005. 12 월 말					
		법 인 소 유 면 적			임 차 면 적		
		백만	십만	만 천 백평	백만	십만	만 천 백평
①	논						
②	밭						
	⑦ 과 수 원						
③	목 초 지						
④	합 계 [①+②+③]						

▶ 법인 소유면적은 법인소유의 경지중 임대 등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면적은 제외합니다.

▶ 임차면적에는 농가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법인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을 조사합니다.

→ 과수원은 밭면적에 포함

→ 「4.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와 연관

3. 농작물 재배면적

→ 2005년 중 농작물별 재배면적을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가. 노지재배 작물명	부 호	재 배 면 적						나. 시설재배 작물명	부 호	재 배 면 적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평	십만			만 천 백	십	평			
① 논 벼	01						① 채소류	06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합 계	99						합 계	99							

논벼	01	특용작물(약용, 전매작물포함)	08
백류(보리, 밀 등)	02	화훼	09
두류(콩, 팥 등)	03	사료작물(호밀, 옥수수 등)	10
잡곡(옥수수 등)	04	종자, 종묘(벼묘, 채소묘 등)	11
서류(고구마, 감자 등)	05	버섯	12
채소류(배추, 고추, 수박 등)	06	기타	13
과수(사과, 배, 포도 등)	07		

→ 해당작물의 분류와 부호에 주의

▶ 2005년도 생산실적이 없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면, 재배면적을 기입합니다.

4. 가축 및 가금 사육두수

→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가금의 사육두수와 지난 1년 동안의 판매두수를 기입합니다.

종	류	사육두수(2005. 12월말)					연 간 판 매 두 수				
		십만	만 천	백	십	마리	십만	만 천	백	십	마리
①	한 육 우										
②	젖 소										
③	돼 지										
④	닭										
⑤	꿀 벌										
⑥	기타 ()										

▶ 젖소는 암소만을 기입하시고, 숫소는 한육우에 포함합니다.

▶ 송아지, 병아리 등 새끼도 마리수에 포함합니다.

▶ 닭은 「백마리」, 꿀벌은 「통」 단위로 기입합니다.

▶ 기타는 곰, 파충류, 곤충류, 양서류, 환형동물, 양잠업을 포함합니다.

단위 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등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다음 항(5항)부터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법인만 조사합니다.

5. 농업경영 개시년도 → 법인설립년월과 법인으로서 농업을 처음 개시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가. 법인설립년월

				년					월
--	--	--	--	---	--	--	--	--	---

 나. 농업경영개시년월

				년					월
--	--	--	--	---	--	--	--	--	---

▶ [나. 농업경영개시년월]은 법인설립 후 농업경영을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6.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표지의 [사업체 구분]에서 [단독사업체] 또는 [2.본사·본점]에 ○표한 법인만 조사합니다.

가. 출자자수 및 출자금(자본금)				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				
구분	출자자수		출자금(자본금)계		구분	2005. 12 월 말		
	2005. 12월 말	천 백 십 명개	2005. 12 월 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농업인					①현물출자			
②비농업인					②정보보조금누계			
③생산자단체					③정부유자금잔액			
④합계[①+②+③]								

▶ 법인설립이후 받은 보조금 누계
출자자란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주주로서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한 사람(기관)을 말합니다.
▶ 농업인이란 300명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정부보조금 누계 중 2005년 보조금
▶ 정부에서 융자한 정책자금을 말하며 농·수·축협에서 자체 대출한 융자금은 제외

7. 농축산물 판매(수입)액 → 지난 1년간(2005년도) 농업생산 및 농업생산이의 사업에 의한 판매(수입)액을 유형별로 기입합니다.

가. 농업생산수입				나. 농업생산이의 사업수입			
구분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구분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천의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①작물재배업				④농축산물가공업			
②축산업				⑤농축산물유통업			
③합계[①+②]				⑥영농대행수입액			
※ 판매 또는 수입유형 (판매 및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⑦농업서비스업			
				⑧기타사업수입			
				⑨합계[④+...+⑧]			

▶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모두에 각각 조사합니다.
▶ 농업서비스업이란 선과, 선별 등 농업관련서비스를 말합니다.
▶ 판매 및 수입실적이 전혀없는 경우에는 「판매 또는 수입유형」 옆 빈칸에 「가」 및 「나」의 세부유형부호 「①, ②, ④~⑧」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8. 경영 상태 → 지난 1년간(2005년도) 경영상태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가. 회계장부 작성 여부		나. 사무실 사용 여부			
회계장부작성	○표	사무실사용	소유	임차	무상
결산서(재무제표)작성	1	사단독사용	1	2	3
간이장부만작성	2	용공동사용	4	5	6
장부를작성하지않음	3	사무실없음	7		

▶ 가. 회계장부 작성여부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단독사업체] 또는 [본사·본점]인 법인만 조사합니다.
- 일반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지사·지점·분점]인 경우에도 모두 조사합니다.
▶ 나. 사무실 사용여부는 사무실 사용형태 중 주된 것 하나에만 ○표합니다.

■ 「가」에서 [결산서(재무제표) 작성]에 ○표한 경우, 결산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십시오.

다. 자산, 부채와 자본

◆ 2005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자본을 기입합니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I. 유 동 자 산						
II.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I + II]						
I. 유 동 부 채						
II.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I + II]						
I. 자 본 금						
II. 잉 여 금 등						
자 본 총 계 [I + II]						

- ▶ 결산마감월이 12월이 아닌 업체는 결산서대로 기입하시고 결산월을 적요란에 기입합니다.
- ▶ 관련 항목이 없을 때는 사선(/)을 그어 주십시오.
- ▶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라. 사업수지 사항

「7. 농축산물 판매(수입)액」과 일치
 ◆ 2005년도 사업수지를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I. 매 출 액						
II. 매 출 원 가						
III. 매출총이익(손실) [I - II]						
IV. 판 매 비 와 관 리 비						
V. 영 업 이 익(손실) [III - IV]						
VI. 영 업 외 수 익						
VII. 영 업 외 비 용						
VIII. 경 상 이 익(손실) [V + VI - VII]						
IX. 특 별 이 익						
X. 특 별 손 실						
XI. 법 인 세						
XII. 당기순이익(손실) [VIII + IX - X - XI]						

적 요

▶ 전년대비 증감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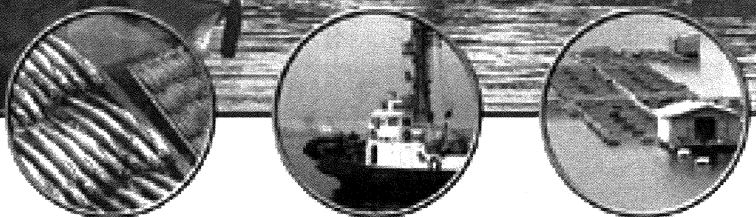
▶ 판매 및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는 그 사유 :

▶ 기 타 (결산월 등) :

조사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기준 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표



사업체 명부의 고유번호 이기

2006. 1월 기준 행정구역분류부호(사업체명부 참고)

■ 이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13조, 제14조)

※ 사업체고유번호	※ 행정구역번호	※ 조사표일련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지방청·사무소(출장소)에서 일괄부여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전화번호	사무실(사업장) : () - <small>사업체명과 비교하여 하나에만 O표</small>				
④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⑤ 조직형태	10. 영어조합 30. 일반회사 40. 국가·지방자치단체 50. 생산자단체 60. 학교 70. 기타				
⑥ 사업체 구분	1. 단독사업체 2. 본사·본점 3. 지사·지점·분점				
	▶ 사업체 구분이 「3. 지사·지점·분점」인 경우만 작성				
	본사명	전화번호		() -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⑦ 종사자 수 (2005. 12. 31. 현재)	합 계	상근출자자 (비상근자 제외)	상근고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임시 및 일일종사자란 2005. 12. 31. 현재 종사자로서 일당 등 부정기적으로 노임을 받고, 지난 1년간 90일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응답자명	조사 담당자		(인)	내용 검토자	(인)
전화번호	() -				

조직형태가 「10」 이면서 사업체구분이 「1,2」 이면 반드시 1명 이상

1. 양식장 시설 → 양식장시설을 보유하고 해수면양식 또는 내수면양식을 경영하는 경우, 2005년말 현재 경영하고 있는 양식장의 시설면적을 기입합니다.

구 분			시설면적			
			십만	만	천	백평
①	어	류				
②	패	류				
③	해	조				
④	갑	각				
⑤	기 타 수 산 동 식 물					
⑥	합 계 [① + ... + ⑤]					

▶ 시설면적이란 어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기 위한 수족관, 그물망등 시설의 실제 면적을 말합니다.
 - 사료 및 어자재창고, 사무실 등 부대 시설은 제외

▶ 「ha」를 사용하고 있으면 「평」으로 환산하여 기입하십시오.
 (1ha = 3,025평)

▶ 「5. 수산물판매(수입)액」의 해수면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과 연관

2. 보유 어선현황 → 2005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선현황을 기입합니다.

가. 보유 어선척수

구 분			2005.12 월말		
			백	십	일
①	동	력 선			
②	무	동 력 선			
③	선	외 기 선			
④	합 계 [① + ② + ③]				

▶ 2005. 12월말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어선척수를 기입합니다.
 - 법인소유의 어선이지만 남에게 임대한 어선은 제외하되, 임차하여 사용하는 어선은 포함합니다.

▶ 「5. 수산물판매(수입)액」의 원양, 근해, 연안어업과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

나. 동력어선 내역

나-1. 톤수별		나-2. 선령별		나-3. 연중출어일수별	
구 분	척 수	구 분	척 수	구 분	척 수
	십 일		십 일		십 일
①	10톤 미만	①	5년 미만	①	30일 미만
②	10~20톤	②	5~10년	②	30~60일
③	20~50톤	③	10~15년	③	60~90일
④	50~100톤	④	15~20년	④	90~180일
⑤	100톤이상	⑤	20년이상	⑤	180일이상
⑥	합 계	⑥	합 계	⑥	합 계

◆ 상기 「가. 보유어선척수 중 ①동력선」을 톤수별, 선령별 및 연중 출어일수별로 분류하여 기입합니다.

▶ 선령은 선박을 건조하여 진수한 날로부터 2005년말까지 경과년수를 만으로 기입합니다.

▶ 연중출어일수는 지난 1년간(2005년) 어업 생산활동을 위하여 출어한 일수를 기입합니다.

「가. 보유어선 척수」의 동력선 척수와 일치

■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등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다음의 항(3항)부터는 영어조합법인 및 일반회사법인만 조사합니다.

3. 어업경영 개시년도

▶ 법인설립년월과 법인으로서 어업을 처음 개시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가. 법인설립년월 년 월 나. 어업경영개시년월 년 월

▶ [나. 어업경영개시년월]은 법인설립 후 어업경영을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합니다.

4.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 영어조합법인 중 표지의 [사업체 구분]에서 [1. 단독사업체] 또는 [2. 본사·본점]에 ○표한 법인만 조사합니다.

가. 출자자수 및 출자금(자본금)

구 분	출자자수			출자금(자본금)계			
	2005. 12월말			2005. 12월말			
	천	백	십 명개	천	백	십	억 천만 백만원
① 어업인							
② 비어업인							
③ 생산자단체							
④ 합계[①+②+③]							

6-다. 자본금액과 일치

나. 현물출자 및 정부지원금

구 분	2005. 12월말			
	천	백	십	억 천만 백만원
① 현물출자				
② 정부보조금누계				
②-1 2005년 정부보조금				
③ 정부용자금잔액				

▶ 정부보조금누계 중 정부에서 융자한 정책자금을 말하며 농·수·축협에서 자체 대출한 융자금은 제외

▶ 지난 1년간(2005년도) 어업생산 및 어업생산이의 사업에 의한 판매(수입)액을 유형별로 기입합니다.

5. 수산물 판매(수입)액

가. 어업생산수입

구 분	천	백	십	억	천만	백만원
① 원양어업						
② 근해어업						
③ 연안어업						
④ 해수면양식어업						
⑤ 내수면어업						
⑥ 합계[①+...+⑤]						

「1. 양식장 시설」 「2. 보유어선 현황」 과 비교하여 검토

나. 어업생산이의 사업수입

구 분	천	백	십	억	천만	백만원
⑦ 수산물가공업						
⑧ 어업서비스업						
⑨ 수산물유통업						
⑩ 기타사업수입						
⑪ 합계[⑦+...+⑩]						

※ 판매 또는 수입유형 (판매 및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 여러 가지 사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모두에 각각 기입합니다.

▶ 어업서비스업이란 어류선별 등 어업관련서비스를 말합니다.

▶ 판매 및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판매 또는 수입 유형」 옆 빈칸에 「가」 및 「나」의 세부유형부호 「①~⑤, ⑦~⑩」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6. 경영 실태

▶ 지난 1년간(2005년도) 경영실태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가. 회계장부 작성 여부

회 계 장 부 작 성	○표
결산서(재무제표) 작성	1
간이장부만 작성	2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3

나. 사무실 사용 여부

사 무 실 사 용	소유	임차	무상
사 단 독 사 용	1	2	3
	용 공 동 사 용	4	5
사 무 실 없 음		7	

▶ 가. 회계장부 작성여부
- 영어조합법인은 [단독사업체] 또는 [본사·본점]인 법인만 조사합니다.
- 일반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지사·지점·분점]인 경우에도 모두 조사합니다.

▶ 나. 사무실 사용여부는 사무실 사용형태 중 주된 것 하나에만 ○표합니다.

■ 「가」에서 [결산서(재무제표) 작성]에 ○표한 경우, 결산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십시오.

다. 자산, 부채와 자본

◆ 2005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자본을 기입합니다.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I.	유 동 자 산						
II.	고 정 자 산						
자 산 총 계 [I + II]							
I.	유 동 부 채						
II.	고 정 부 채						
부 채 총 계 [I + II]							
I.	자 본 금						
II.	잉 여 금 등						
자 본 총 계 [I + II]							

라. 사업수지 사항

「5. 수산물 판매(수입)액」과 일치
 ◆ 2005년도 사업수지를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구	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I.	매 출 액						
II.	매 출 원 가						
III. 매출총이익(손실) [I - II]							
IV. 판매비와관리비							
V. 영업이익(손실) [III - IV]							
VI. 영업외수익							
VII. 영업외비용							
VIII. 경상이익(손실) [V + VI - VII]							
IX. 특별이익							
X. 특별손실							
XI. 법인세							
XII. 당기순이익(손실) [VIII + IX - X - XI]							

- ▶ 결산마감월이 12월이 아닌 업체는 결산서대로 기입하시고 결산월을 적요란에 기입합니다.
- ▶ 관련 항목이 없을 때는 사선(/)을 그어 주십시오.
- ▶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입합니다.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적 요

- ▶ 전년대비 증감요인 :
- ▶ 판매 및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는 그 사유 :
- ▶ 기 타 (결산월 등) :

조사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